

월·간

#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2

## 현안분석

- 유로화 출범배경과 EU통합관련 과세문제
- 우회수출에 관한 반덤핑 규제 문제
-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과 조세·재정정책

## 한국조세의 이해

관 세

## 정책연구

현행 세법상 주식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

## 정책흐름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준조세 정비 외

## C · O · N · T · E · N · T · S

권두칼럼	2	사회의 투명성과 조직의 보고책임 / 李愚澤
현안분석	6	유로화 출범배경과 EU통합관련 과세문제 / 孫元翼
	21	우회수출에 관한 반덤핑 규제 문제 / 張權鎬
	35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과 조세·재정정책 / 崔滄旭
한국조세의 이해	50	관세 / 張權鎬
정책연구	60	현행 세법상 주식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李恩尙·李俊奎
	64	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소비세 세수추계 / 成明幸
	68	전자상거래 시대의 조세정책 / 金裕燦·洪範教
경제단상	72	언제나 시작은 눈물로 / 白承勳
	74	의사결정의 분산화와 회계제도 / 李熙洙
문화기행	76	서원을 찾아서: 임진왜란이라는 절대 위기를 이겨낸 위기관리요인자 서애 유성룡 선생을 배제한 병산서원 / 李滄
정책흐름	81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준조세 정비
	92	Mutual Fund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94	근거과세기반 구축을 위한 가장신고자 확대사업 추진
	97	1998년 5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상황
	98	IMF가 발표한 "아시아 경제위기 국가에 대한 정책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 재정정책 관련부문 -
재정통계	103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09	변호사 탈세 뿌리 뽑아야 외

# 사회의 투명성과 조직의 보고책임

李 愚 澤 /한양대학교 교수

**사**회의 발전은 그 사회의 투명성 여부에 좌우된다.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사회조직들이 투명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비능률과 비리로 귀결되고 이로 인한 각종 폐해가 사회발전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도 사회조직들의 대부분이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되어 비능률과 비리가 누적되어 오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문장과 숫자의 형식을 취한다. 문장에 의한 보고책임은 조직의 운용에 관한 관리 또는 영업보고서, 주요 정책의 결정에 관한 회의록이나 그 집행에 관한 문서 등으로 이행하고, 숫자에 의한 방법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이 될 수 있다. 비영리조직의 경우에는 문장에 의하여, 영리조직의 경우에는 숫자

에 의하여 주요 보고책임이 이행된다. 이러한 조직들에는 재벌기업에 위시한 기업경영조직, 금융기관, 정부투자 공기업과 기금들,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 정치자금관련 조직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조직이 해당된다. 최근에는 순수 영적 조직체인 모종교집단마저 폐쇄적 운영과 비리문제로 흉역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조직들이 얼마나 투명성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지 그 병폐의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조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양에서는 일찍이 「보고책임(accountability)」기능이 발달하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보고책임은 조직의 책임자가 그 조직의 활동내용과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해당사자들에게 공표하는 의무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설명책임」 또는 「회계책임」 등으로 뉘앙스를 달리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조직의 경영을 위임받은 책임자가 수행한 수탁내용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명책임을 이행하는 방법은

최근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업들의 과다차입금과 중복투자, 상호지급보증, 비능률적이고 방만한 경영 등도 기업경영에 대한 보고책임 또는 회계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일치시키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공적 비영리조직의 설명책임을 이행할 위하여 몇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토양이 보고책임의 기능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완강한 폐쇄적 권위주의 문화라는 데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가치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가부장적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사회가 수직화되어 조직의 어른이 결정하고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조직의 책임자는 설명 또는 보고할 의무가 생략되어 있다. 밑에 있는 조직원이 그 내용을 알

## 앞으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의 설명책임 또는 보고책임 기능은

공적 비영리조직,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정부조직이나 정부투자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것이다.


려고 하는 것은 곧 불경죄로 치부되며 실제 조직원이나 이해당사자가 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라고 할 어떤 장치나 수단이 사회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가족적 권위주의 사고는 곧 정치적 권위주의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는 극도로 폐쇄주의적이고 가부장적 형태로 굳어 있다. 폐쇄적 권위주의 정치문화는 경제, 법률, 행정, 사법 등 각 부문에 영향을 미쳐 모든 사회조직들이 폐쇄적 권위주의 특성을 가지며 조직의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게 된다. 그래서 사회조직들은 비능률과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투명성을 부르짖고 있는 요사이에도 실제 우리 사회의 내면을 분석하여 보면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는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완강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고 통치자는 법치보다는 행정국가지주의적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삼부(三府)를 지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 정치문제는 여·야 보스들이 은밀히 만나야 가닥이 잡혀 해결되며 그들이 합의한 사항은 법규나 사회규제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하다. 룰에 의한 게임(game by rule)이 아닌 룰을 무시하는 정치적 빅딜이 횡행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서 조직의 책임자는 조직원이나 이해관계자 또는 국민에 대한 보고책임보다는 윗 어르신의 눈치만 살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사안들은 이러한 정치적 해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사회의 투명성을 차단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문화의 벽을 허물지 않고 사회가 투명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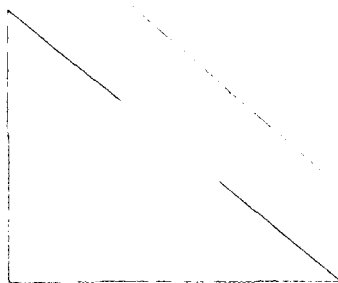
보고책임의 이행이 어려운 이러한 환경에서 회계기준 몇 개를 골라 국제회계기준에 맞춘다고 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순박하고 안이한

생각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폐로서 표피적 대증요법(表皮的 對症療法)으로 접근해서는 치유하기 어렵고 깊이 잠재하고 있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치유방법을 찾아내는 병인요법(病因療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경영의 환경, 특히 정치적 환경이 투명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그 장애요인을 제거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 더욱이 공적 조직은 정치적 영향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문화의 문제점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학제적(學際的) 접근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의 설명책임 또는 보고책임 기능은 공적 비영리 조직, 특히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정부조직이나 정부투자 조직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된다. 현 시점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기업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 차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공적 조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고책임을 실행시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외국에서는 중앙정부 및 각종 정부투자기업 또는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공적 조직들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보고책임의 의무를 이행시키려는 개념적·이론적 연구와 구체적 기법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적 조직의 보고책임 이행을 보장할 연구나 투자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조직들의 설명책임 기능을 충실히 이행시키려면 정치문화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일반 국민, 전문가, 정치권, 정책당국 및 언론 등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때 사회적 압력(social pressure)으로 작용하여 우리 사회가 투명하게 되는 시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 현안분석



## 1. 유로화 출범배경과 EU통합관련 과세문제

孫 元 翼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2. 우회수출에 관한 반덤핑 규제 문제

張 槿 鎬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3.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과 조세·재정정책

崔 濬 旭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유로화 출범배경과 EU통합관련 과세문제



孫元翼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억 9천만명의 인구나  
전세계 GDP의 24.2%,  
세계 무역의 31.9%를  
차지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로화는  
중장기적으로 달러화,  
엔화와 함께 3국  
통화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 1. 유럽통화통합의 배경

### 1. 유로화 출범의 의의

1999년 1월 1일부터 유럽경제가 단일통화인 유로(Euro)로 통합됨에 따라 유럽경제통화연합(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참가국들은 유로(Euro)화를 자국의 공식통화로 사용하게 되었다. 단일통화 참가국들은 통화통합을 통하여 실물경제와 통화부문을 총망라한 실질적인 경제통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역사와 문화가 다른 11개 국가가 자국화폐를 버리고 단일통화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들간의 경제국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MU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등 11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1996년 기준으로 2억 9천만명의 인구나 전세계 GDP의 24.2%, 세계 무역의 31.9%를 차지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로화는 중장기적으로 달러화, 엔화와 함께 3국 통화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2. 유럽통화통합 추진 경위

유럽통화통합은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산업협력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8년 1월에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창설에 관한 로마조약이 발효된 이후 1964년 5월 유럽경제공동체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발족되었다. 1967년 7월 EC(European Community)가 발족되었고 1969년 EC 정상회담에서 EMU(Economic and Monetary Union)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1970년 유럽 경제 및 통화통합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Werner Report」가 발표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당시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이었던 베르너(Pierre Werner)가 EC 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유럽 통화권 창설을 목표로 1980년까지 단일통화와 공동통화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EC 역내 통화간에는 변경불가능한 고정환율제, 역외국 통화에 대해서는 변동환율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

1979년 3월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가 영국을 제외한 8개국<sup>1)</sup>을 회원국으로 창설되었다. 주요내용은 유럽통화단위(ECU: European Currency Unit)와 환율조정기구(ERM: Exchange Rate Mechanism)의 창설과 상호결제 및 신용제도의 확충에 관한 것이었다. 1989년 4월 경제통화연합을 위한 구체적인 3단계 접근법을 제시한 「Delors Report」가 발표되었는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단일통화를 창출하고 미연방준비제도를 모델로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을 단일중앙은행으로 통합하자는 것이었다. 제1단계에서는 모든 EC 회원국이 EMS에 가입하도록 하여 기존의 제도에 회원국간 경제 및 통화정책상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2단계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의 설립과 경제 및 통화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제3단계에서는 단일통화를 창출하고 유럽중앙은행이 단일통화정책을 수립·집행한다는 것이다.

1991년 12월 「Delors Report」를 일부 수정한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을 체결하였고 EC 12개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1993년 11월 발효되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EMU의 구체적인 일정뿐만 아니라 통화기구, 통화정책, 환율안정 등에 관한 광범위한 결정을 하였으며 통화통합을 위한 각국의 경제수렴 조건도 명문화하였고 EMU를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것을 법제화하였다. 3단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1967년 7월

EC가 발족되었고

1969년 EC 정상회담에서

EMU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1)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아일랜드

1999년 1월 1일

유럽단일통화가

출범되었고

호주 시드니

외환시장에서

1.1747달러로 첫 거래가

이루어졌다.

가. 제1단계(1990. 7~1993. 12)

1992년 통화통합의 기본전제가 되는 물가, 재정, 금리, 환율의 4개 분야에 있어서의 경제수렴조건 달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가장 낮은 3개 회원국 평균물가상승률의 1.5%포인트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재정적자는 경상GDP의 3% 이내, 정부채무는 경상GDP의 60% 이내여야 한다. 환율은 평가시점까지의 2년간에 걸쳐 자국통화와 다른 회원국 통화간의 환율을 ERM의 환율변동 허용폭 내에서 인위적인 평가절하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각 회원국 통화간에 설정된 기준환율을 유지해야 하며, 장기금리는 평가시점까지의 1년간에 걸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평균 명목장기금리의 2.0%포인트를 넘어서는 안된다.

나. 제2단계(1994. 1~1998. 12)

1994년 1월 유럽통화기구(EMI: European Monetary Institute)가 창설되었고 1995년 12월 유럽이사회에서 단일통화의 명칭(Euro)과 개시시기(1999년 1월 1일)을 확인하였다. 1998년 5월 유럽단일통화(Euro) 창설 회원국으로 11개국(EU 회원국 중 영국, 덴마크, 스웨덴, 그리스 제외)을 최종 승인하였다. 1998년 6월 1일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이 창설되고 그 동안 유럽중앙은행 발족을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해 온 유럽통화기구(EMI)는 해체되었다.

유럽중앙은행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6인의 집행이사가 경영진을 구성하며 통화정책 결정은 이들과 유로 11개국 중앙은행장이 이사로 있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총재의 임기는 8년, 부총재는 4년이며 나머지 집행이사들은 각각 5~8년의 임기를 부여받는 독특한 체제를 갖추고 있어 임원 교체에 따른 경영 안정성 결여를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998년 12월 31일 유로화 교환비율을 1유로당 1.16675달러로 확정지었고 유로화의 11국 통화환산비율은 1유로당 1.95583 독일 마르크, 6.55967 프랑스 프랑, 1,936.27 이탈리아 리라, 40.3399 벨기에 프랑, 166.386 스페인 페세타, 0.787564 아일랜드 파운드, 40.3399 룩셈부르크 프랑, 2.20371 네덜란드 길더, 13.7603 오스트리아 실링, 200.482 포르투갈 에스쿠오, 5.94573 핀란드 마르

카로 정하였다.

#### 다. 제3단계(1999. 1~)

1999년 1월 1일 유럽단일통화가 출범되었고 호주 시드니 외환시장에서 1.1747달러로 첫 거래가 이루어졌다.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로화와 참가국 통화를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상품가격도 회원국 통화와 유로화로 병행 표기된다. 신규 발행되는 국채는 유로화로 표시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도 유로화로 전환하되 은행을 제외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은 자발적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로화와 참가국 통화간 환율을 고정시키고 유로화와 비참가국 통화간 신환율체도를 운용한다. 2002년 1월부터 유로화 지폐 및 주화가 발행되고 2002년 7월 회원국 화폐의 병행사용이 종료된다.

유로화는 2002년 1월 유로화 지폐 및 주화가 발행되기 이전까지는 은행, 증권 등 비현금거래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II. 유럽통화통합 이후 변화

### 1. 유로화의 전망

유로화는 시차에 따라 가장 먼저 거래가 이루어진 호주 시드니 외환시장에서 1998년 12월 3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고시한 유로당 1.16675달러보다 0.00795달러 오른 1.1747달러로 출발하여 도쿄, 싱가포르, 홍콩, 런던시장 등을 거치면서 전반적 오름세를 유지하였다. 유로화는 2002년 1월 유로화 지폐 및 주화가 발행되기 이전까지는 은행, 증권 등 비현금거래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유로화 경제권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개선되면서 유럽은 최적통화지역으로 발전할 것이며, 통화통합으로 인한 비용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유로화는 성공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로화 출범 이후 달러환율은 1유로당 1월 5일 1.1812달러 이후 6일 1.1718달러, 9일 1.1585달러, 15일 1.1719달러, 20일 1.1600달러, 25일 1.1602달러, 30일 1.1362달러, 2월 4일 1.1317달러로 변동하였다.

**EMU 11개국의  
경제규모(GDP 기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며,  
15개국이 모두 참여할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단일통화권이 될 것이다.**

## 2. 유로랜드 내의 변화

유로화로 인해 유로랜드 내의 교역비용이 감소하고 EU 역내시장에서의 가격 투명성 증대에 따른 가격수렴 확대 등으로 유럽시장의 자유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을 초월한 기업의 영업활동이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이전에 비해 보다 다양한 양질의 물건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역내거래에 대한 외환거래비용과 역외국과의 거래에서 달러 대신 유로화를 사용함에 따라 외환거래 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역외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역내국가들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되는 무역전환 효과도 예상된다.

독일 IFO 경제연구소는 1986~1995년간 연평균 EU GNP의 약 1%가 환전비용으로 소요된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EU도 1980년대 중반 환전비용을 GDP의 약 0.5% 정도로 추산한 바 있다. 또한 환리스크 프리미엄이 0.5% 인하될 경우 장기적으로 GDP가 5~10%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환전비용, 환리스크가 소멸됨으로써 역내 교역 및 생산이 증대되고 금융·재정정책의 엄격한 통제로 이자율이 하향 안정됨에 따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외환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자본이동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낙관적인 견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기업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비와 조직을 줄이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실직지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러 출범 첫해인 1999년에만 추가로 200만명 정도가 실업상태에 놓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통화통합에 참가한 각국 정부는 통합의 전제로 물가안정과 재정지출 감축을 받아들인 상태이므로 실업이 늘고 임금이 떨어져도 노조가 어떤 보상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통화관리가 유럽중앙은행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고 재정수단마저 상실한 상태이므로 각국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3. 세계 경제의 변화

유로화 출범의 가장 큰 의미는 2억 9천만명의 인구에 6조 3천억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가진 초대형 시장의 탄생이라 할 수 있다. EMU 11개국의 경제규

모(GDP 기준)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며, 15개국이 모두 참여할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단일통화권이 될 것이다.

〈표 1〉 주요 경제지표 비교(1997년)

	EU(15)	Euroland(11)	미국	일본
인구(백만명)	374.1(7.1)	290.4(5.5)	267.9(5.1)	126( 2.4)
실업률(%)	10.6	11.6	5.0	3.4
GDP(10억달러)	8,093	6,309	7,819	4,223
1인당GDP(달러)	21,600	21,700	29200	33,500
OECD GDP 비중(%)	36.4	28.4	35.2	19.0
무역규모(10억달러) <sup>1)</sup>	1,441	1,470	1,462	629

주 : 1. ( )안은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1) Euroland 내, Eu 내 무역 제외.

자료 : Deutsche Bank Research.

1996년  
세계 경제수단의 52%,  
공적보유외환의 64%를  
차지하던 달러의 위세는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고  
대신 유로가 결제 통화와  
공적 보유에서  
각기 40%와 35%  
정도를 잠식할 전망이다.

유럽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통화정책을 집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럽 좌파정부들은 실업완화를 위해 금융완화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유로화가 저평가되고 미국이 이에 반발할 경우 미국과 유럽간 통상마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1996년 세계 경제수단의 52%, 공적보유외환의 64%를 차지하던 달러의 위세는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고 대신 유로가 결제통화와 공적보유에서 각기 40%와 35% 정도를 잠식할 전망이다. 국제결제통화로서 유로화 참여 4개국(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통화의 비중은 24.8%이며 나머지 7개국을 포함하면 유로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유로 참여국간 내부거래를 제외하면 실제 유로화 비중은 18.3% 정도로 추정된다.

단일화된 유럽은 미주와 아시아대륙에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기존의 지역경제블록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등 새로운 경제블록의 출현을 앞당겨 지구촌의 경제블록화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최근 일본의 생명보험사들은 자산의 달러운용 비중을 대폭 줄이고 대신 유로 비중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신규 매입할 외국채권의 절반 이상

**유럽기업들이  
기업활동에 따르는  
제비용의 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게  
될 것이고 아시아 등의  
역외국에 대하여도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 1조 5천억엔을 유로채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생명의 경우 신규투자액 1조엔 중 90%를 유로표시로 운용키로 하였고 은행, 증권 등 다른 기관투자들도 신규투자의 50~70% 정도를 유로표시로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무역규모(1996년)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미국, 동남아, 일본, EU가 각각 20%, 18%, 17%,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수출 추이를 보면 미국 및 일본으로의 수출의존도가 점차 줄어들고 EU 및 기타지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수출입 결제통화 중 유럽지역의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3~5% 수준으로 크지 않으나 EU 및 기타지역(동구권 및 아프리카 포함)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이들 기업들이 유로화 결제를 요구할 경우 유로화 결제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통화통합 참가국들은 역내교역이 활성화되어 역외로부터의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긴축재정의 운용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안정 노력의 강화로 수출경쟁력이 향상되는 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 나라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초경제여건 강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증대로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긍정적인 기대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저금리 및 시장확대 등으로 유로랜드 내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우리 기업의 신규투자가 확대되고 유럽지역 내 기존 투자도 환리스크 회피를 위해 통합통화 참가국으로 이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로화가 전세계 금융자산 및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것이므로 국내 금융기관은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면에서 유로화의 구성 비중을 늘리게 될 것이다.

##### 나.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유럽기업들이 기업활동에 따르는 제비용의 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게 될 것이고 아시아 등의 역외국에 대하여도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된다. 유로화의 출범은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은 이러한 시장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업마케팅, 제품생산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로랜드 현지 경쟁업체들의 저가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거점을 유럽대륙으로 이전하거나 역내 물류 및 판매시스템의 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유로화관련 외환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회계 및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전문요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상국가별 수출가격 단일화, 새로운 결제시스템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유럽과의 교역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 대부분이 유로화 출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III. 조세제도의 통합을 위한 과제<sup>2)</sup>

유로화 출범을 앞두고 지난 12월에 있었던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세계개편 및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빈부격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세계 단일화에 대한 방안이 부분적으로 논의되었으나 대부분 결론을 얻지 못했다. 법인세나 이자소득세 등 금융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관한 의제도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그 동안 간접세 분야에서의 통합은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소득세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조세제도의 통합은 간접세보다는 소득세 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로화 참가국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이고 개인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이며 핀란드는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이 가장 낮다. EU 회원국 중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유로화 비참가국인 영국과 스웨덴이다. 부가가치세율의 경우 지리적으로 먼 국가들의 세율보다 생산요소의 이동이 용이한 인접국가들의 세율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본을 비롯한 생산요소의 조세경쟁은 이동이 자유로운 요소를 중심으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간접세 분야에서의  
통합은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소득세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조세제도의 통합은  
간접세보다는 소득세  
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Prof. Frans J. Vanistendael의 "European Taxation in the 21st Century: The Road towards Integration" (IBFD, 1998)을 참조.

향후 단기적으로는  
세율 이외의 조세제도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에  
대한 조화를 통하여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세부담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표 2〉 각국의 세율 비교

(단위 : %)

	부가가치세율 (표준세율)	법인세율 (중앙정부)	개인소득세율 <sup>1)</sup> (중앙정부)
오스트리아	20	34	50
벨기에	21	39	56.65
핀란드	22	28	38
프랑스	20.6	33 <sup>1/2</sup>	54
독일	15	45/30	53
아일랜드	21	38	48
이탈리아	19	36	51
룩셈부르크	15	33	50
네덜란드	17.5	35	60
포르투갈	17	36	40
스페인	16	35	47.60
영국	17.5	24	40
덴마크	25	34	60
스웨덴	25	28	25
그리스	18	40	40

주: 1) 최고세율임.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1997.  
OECD, The OECD Tax Data Base, 1997, 1998.

유로화 출범 이후 조세제도의 변화에 대해 장·단기적 전망을 소개한다. 단기  
란 유럽통화통합 개혁과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유로화가 본격적으로  
발행·유통되기까지의 향후 2~3년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장기란 최소한 5년 정  
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유럽국가들과 유로화를 연계하는 경제체제  
및 경제기구가 구축되는 시기에 해당하는 전망이라 할 수 있다.

가. 단기전망: 조세법 자체의 발전과 직접 관련

단기적으로는 유럽법원(ECJ)의 판례법이 진전을 보이고 불공정경쟁규칙의 조  
세에 대한 적용과 유해조세경쟁의 개념이 부각될 것이며,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자, 배당, 로열티)에 대한 EU 조세제도의 점  
진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럽공동체조약(EC Treaty)에 의하면 기본자유 보장의 개념을 중요한 법적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EC 회원국간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상의 차별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

그 동안 유럽법원(ECJ)의 판례(Schmacker, Wielockx, etc.)에 의하면 '회원국간의 세법 부조화'의 이유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과세상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The Gilly Case'의 경우 문제의 핵심이 두 나라간의 세율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나, 두 나라간의 세율 차이를 '회원국간의 세법 부조화'로 해석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왜냐하면 자국의 소득세율을 결정하는 권한은 각 회원국이 갖고 있는 재정주권의 핵심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세율간의 부조화를 언급하는 데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단기적으로는 세율 이외의 조세제도(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에 대한 조화를 통하여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세부담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그 동안 유럽공동체조약(EC Treaty)에서 사용하였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개념과는 다른 경쟁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강조되었던 경쟁의 개념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과세차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유해조세경쟁과 관련된 경쟁개념은 이전의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단일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의미한다. 즉,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거주자보다 유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개념이다.

유로권 내 각국간 환율변동의 위험이 사라짐으로써 법인세 및 이자·배당에 대한 세부담의 차이에 따라 자본이동이 급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각국은 조세경쟁에 참여할 유인을 갖게 되며 이는 유해한 조세경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독일을 포함한 법인세 부담이 큰 국가들은 법인세의 하한선을 정하자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EU 차원에서는 모든 이자소득에 무조건 20%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과세강화로 정책방향이 설정될 경우 EU 내의 자본이 EU 밖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정책방향의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세제도가 유럽통화연합(EMU)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유로랜드 내의 각국의 화폐가 사라지는 시기까지는

**조세제도상의 정비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은 EU 회원국과 제3국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의 공통규칙을 확립하는 것이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조세조약 협상에서는 EU 지침이 각 회원국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사회적 정부를  
설립하여 유럽중앙은행의  
힘을 균형 있게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배당·로열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과 유해조세경쟁을 억제하기 위  
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제도상의 정  
비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은 EU 회원국과 제3국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의 공통규칙을 확립하는 것이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조세조약 협상에서는 EU지침이 각 회원국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 장기전망: 유럽기구(European Institution)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발전  
장기적으로는 조세관련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  
제로 대체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힘을 균형 있게 견제할 수 있는 경제·사  
회적 정부(economic and social government)를 설립하여 세법의 입법권 중 일  
부를 경제·사회적 정부에 위임하게 되는 상황을 전망할 수 있다. **KIP**

< 참고 >

EU 회원국의 재정규모

		조세수입 (백만US달러)	1인당 조세부담액 (US달러)	조세부담률 (사회보장 제외)	GDP (10억US달러)
통화통합 참가국	벨기에	123,412	12,150.4	31.1	268.08
	네덜란드	171,327	11,057.6	26.1	395.97
	룩셈부르크	7,582	18,138.0	32.8	16.96
	오스트리아	100,721	12,496.4	28.7	228.88
	스페인	197,021	5,017.1	21.6	584.88
	포르투갈	36,167	3,640.4	25.9	103.57
	이탈리아	525,026	9,135.2	28.5	1,214.23
	프랑스	702,845	12,039.1	26.0	1,536.45
	독일	896,238	10,946.1	22.6	2,353.16
	핀란드	60,285	11,763.0	35.8	125.12
	아일랜드	23,807	6,574.8	29.1	70.72
통화통합 비참가국	영국	414,955	7,059.2	29.8	1,153.35
	덴마크	91,302	17,351.2	50.6	174.87
	스웨덴	130,812	14,696.4	36.5	251.74
	그리스	39,538	3,778.1	28.1	97.43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97.

# 우회수출에 관한 반덤핑 규제 문제



張 槿 鎬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1. 논의의 제기

WTO 반덤핑협정에 따르면 회원국 제품이 정상가격(일반적으로 수출국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국은 이를 덤핑으로 간주하고 WTO 규정상 예외적으로 덤핑제품(또는 덤핑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덤핑조치는 원래 악탈적 가격전략(predatory pricing)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지만 선진국 사이에서 무역 규제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특히, 1985년 당시 15개국에 불과하던 반덤핑 규제 국가가 1998년 현재 73개국에 달하는 등 반덤핑 규제제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주요 수출국 사이에서 반덤핑 규제제도의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WTO 이행협정에는 동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GATT 제6조에서 정상적인 가격행위를 덤핑으로 간주하는 등 덤핑의 개념이 원천적으로 불합리하게 정의되어 있고, 또한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회원국의 자율성을 상당 수준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덤핑협정 자체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WTO 반덤핑관행위원회(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에서

**반덤핑조치는 악탈적 가격전략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지만 선진국 사이에서는 무역 규제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반덤핑관행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우회수출 규제가  
앞으로 WTO 신협상에서  
정식으로 채택된다면  
반덤핑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품의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

논의중인 우회수출의 규제가 앞으로 WTO 신협상(New Round)에서 정식으로 채택된다면 반덤핑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품의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 특히, 선진국 방안이 채택될 경우 덤핑과 피해에 대한 독립된 조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기존의 반덤핑조치를 우회수출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현행 WTO 반덤핑법의 적용이 크게 확대될 것이며 결국 선진국의 자의적인 반덤핑 규제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품이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수출업체가 공장 이전, 제품의 변형, 또는 부분품의 수출 등을 통하여 반덤핑조치를 우회하는 경우가 있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이후 철저한 사후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회수출에 관한 규제는 선진국과 아시아 제국 사이에 참여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로서 WTO 등 국제기구에서 천명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명확하므로 미국·EU와 같은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으나 반덤핑 규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의 국제적 입장과 합치되면서 또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 II. 우회수출(circumvention)

우회수출은 주로 수출업체가 제3국이나 수입국 내에 공장(screwdriver plant)을 설치하고 현지에서 부품을 조립·생산함으로써 수입규제를 회피하려는 방식의 수출 등을 뜻한다.

반덤핑 규제조치가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서 UR 교섭과정에서 우회수출의 방식이 선진국에 의하여 논의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선진국의 반덤핑 규제나 세이프가드를 기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수입국에 공장을 신·증설하였으며 선진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관행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우회수출을 반덤핑관세 적용대상 제품의 선적, 생산 또는 외형을 근소하게 변경 혹은 개조함으로써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고 WTO 반덤핑협정의 목적과 이에 따른 규제효과를 저해하는 방식의 수출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후진국의 값싼 노동력이나 선진기술 활용 또는 비교우위의 변화와 완성품에 대한 차등관세를 극복하기 위한 생산기지의 이전 등 생산의 국제적 분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문제는 이러한 동기에서 발생한

무역패턴의 변화와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려는 불공정 우회수출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국제분업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선진국의 반덤핑 규제는 이러한 생산기지의 현지화 등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바, 결국 선진국은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자국 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불완전하기 이를 데 없는 반덤핑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1. 수출제품의 경우

선진국의 자의적인 반덤핑 규제와 이에 따른 우회수출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가 있다. 지난 1974년 국내업체가 처음 컬러TV를 개발·수출하자 미국은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를 실시한 바 있고, 동 협의가 1982년에 종료되면서 이후 국내수출이 활기를 띠자 미국은 1984년 우리나라 컬러TV에 대하여 0.23~16.57%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확정·부과하였다. 그 결과, 1983년 수출실적이 2억 3천만달러에 달하는 등 성장추세에 있던 우리나라 컬러TV의 미국수출이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1991년 국내업체의 직수출은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sup>1)</sup>. 미국의 반덤핑 규제조치로 인하여 직수출이 어렵게 되자 1985년을 전후하여 국내업체는 미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였고 이후 NAFTA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인 1989년경 삼성전자(3억달러), LG전자(2억달러), 대우전자(6천만달러)의 국내업체가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업체는 1995년 8월 우회덤핑 수출 혐의로 국내 3사를 제소하였으나 1997년 12월 동 신청을 철회하게 된다.

컬러TV 사례는 반도체 D램과 함께 미국 행정당국의 자의적 규제 적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원래 WTO 이행협정에 따라 덤핑마진이 2% 이하의 미소마진(de minimis)인 경우에는 반덤핑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제5조 제8항). 이에 근거하여 미연방 규정은 덤핑업체가 3년 연속 정상가격으로 덤핑제품을 판매하고 미래에도 덤핑할 '가능성'이 없으면 상무성 장관이 반덤핑명령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9 CFR 351.222(b)).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1991년까지 진행된 제4차 및 5차 연례재심에서 0.5%의 미소마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유 없이 재심이 연기되었다가 최종적으로 1996년에 진행된 제6차 및 7차 재심에서도 미소마진의 판정을 받았으나 반덤핑관세가 철회되지 않았다<sup>2)</sup>. 이에 우리 정부는

**우회수출은  
주로 수출업체가  
제3국이나 수입국 내에  
공장을 설치하고 현지에서  
부품을 조립·생산함으로써  
수입규제를 회피하려는  
방식의 수출 등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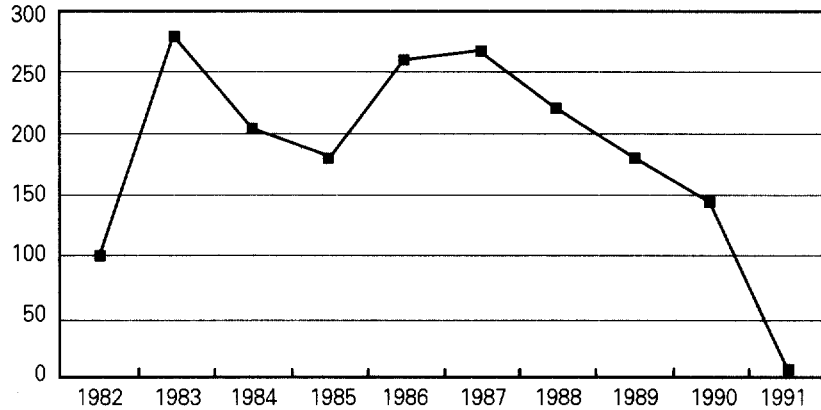
1) 1985년과 1986년은 미소(微少)마진 판정으로 수출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었다. 한편, EU도 미국에 이어 1988년부터 우리나라 컬러TV(16인치 이하)에 대하여 10.2~19.6%에 이르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 미국은 UR 협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반덤핑제도가 적용된 사례에 대하여 WTO 협정상의 2% 마진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0.5% 미소마진을 적용하고 있다(19 CFR 351.106(c)(1)).

컬러TV나 반도체 D램의 경우 반덤핑협정에서 소위 회색지대에 속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재심이 연기되거나 모호한 논리에 따라 수입규제가 지속됨으로써 수출국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례에 해당한다.

〈그림 1〉 컬러TV의 연도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달러)



자료: <http://www.mocie.go.kr/kto/new/review1호/조치호.htm>

1997년 WTO에 제소하였고 그 결과 미국 정부는 1998년 삼성전자가 덤핑을 다시 시도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동 조치를 종료하였다<sup>3)</sup>.

위의 예는 반덤핑협정에서 소위 회색지대(gray area)에 속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재심이 연기되거나 모호한 논리에 따라 수입규제가 지속됨으로써 수출국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례에 해당한다. 국산 컬러TV는 1984년 이후 무려 14년간 동 조치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 밖에도 TV 브라운관, 금속 취사도구, 판이음쇠, 황동관 등이 10년 이상 미국에서 반덤핑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고, EU에 수출되는 국산 TV(19인치 이하)도 1988년 이후 덤핑 규제를 계속 받고 있다<sup>4)</sup>. 한편, D램 반도체에 관하여 1998년 12월, WTO 패널은 LG와 현대전자가 3년 연속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덤핑협외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미국이 동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GATT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 조치로서 관련 조항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sup>5)</sup>.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우회수출되는 무역규모를 알 수 없으나 잠재적으로 우회수출로 규정될 수 있는 수탁·위탁무역의 규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후 수출하는 수탁무역은 그 규모가 1997년 74억달러에 달하며 주요 품목은 집적회로, 다이오우드, 컴퓨터 부분품

3) 이건호, 『반덤핑조치의 확산과 우리 기업의 대응』, 무역위원회, 1998.

4) WTO 이행협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반덤핑조치가 5년 경과한 뒤 덤핑과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이 우려되지 않을 경우, 회원국은 동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5) 패널결정은 이행협정 제11조 제2항 즉, 재심결과 반덤핑관세 부과가 더 이상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될 경우 즉각 당해 조치를 종결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다.

등의 전자제품으로 상당 부분 미국과 아시아로 수출된다. 위탁무역의 규모는 1997년 기준으로 수출은 약 19억달러, 수입은 약 7억달러에 이른다. 주종제품은 전자·기계제품과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으로서 원자재를 해외(주로 중국과 베트남)에 공급하여 현지에서 가공을 거친 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재수입되어 소비 또는 재가공 후 수출된다.

우리나라에서 반덤핑 규제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경과하였고 43개 사례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된 바 있는데 1996년 이후 조사된 사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표 1〉 우리나라 수탁 및 위탁무역의 연도별 변화

(단위: 억달러, %)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상반기
수탁무역	가공후 수출	52.2 (4.2)	58.8 (4.5)	74.4 (5.5)	37.3 (5.5)
	원자재 수입	35.8 (2.6)	40.6 (2.7)	55.3 (3.8)	26.6 (5.6)
위탁무역	원자재 수출	10.7 (0.9)	15.2 (1.2)	18.5 (1.4)	9.0 (1.3)
	가공후 수입	3.7 (0.3)	6.2 (0.4)	7.3 (0.5)	2.7 (0.6)
전체무역	수 출	1,250.6	1,297.2	1,361.6	676.3
	수 입	1,351.2	1,503.4	1,446.2	475.7

주: ( ) 안은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임.  
자료: 관세청 전산자료.

## 2. 수입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반덤핑 규제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경과하였고 43개 사례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된 바 있는데 1996년 이후 조사된 사례가 상당 부분(21건)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다국적기업이나 변형품을 통한 수입 사례는 상당하다. 남성용 전기면도기의 경우 마쓰시다사(일본)와 필립스사(네덜란드)가 각각 자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제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하였으며 1991년 미국과 일본산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자 미국 듀폰사는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여 반덤핑관세를 회피한 사례가 있다<sup>6)</sup>.

6) 이 밖에도 리히텐슈타인이 산업용 공기조절기를 부분품으로 변형수출한 예가 있다.

**1997년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에 관한 덤핑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당국이 우회 내지는 변형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PS인쇄판은 지난 1989년 국내산업이 생산을 개시한 이래 1993년 12월 당국이 일본산 제품에 대하여 80.7~89.4%에 상당하는 덤핑률을 발견하고 5년간 24.5~38.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런데 PS인쇄판의 사례에서는 반덤핑관세의 적용과 함께 발생한 정상수입품의 가격 하락 그리고 이들 제품의 급격한 수입 증대로 전체 수입은 증가하는 모습을 띤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주된 이유는 다국적기업인 후지사가 일본에서 네덜란드로 수출지를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즉, 1992년 당시 일본산 제품의 수입점유율은 82%에 달하였으나 1994년에는 네덜란드산 제품의 수입점유율이 65%에 달하였고 그 이후 2년간에도 네덜란드산 제품 수입이 계속 증가하였다. 만약 미국과 EU의 견해에 따르면 덤핑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네덜란드산 PS인쇄판에 대하여 독립된 조사 없이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24.5~38.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 제 4조의 7 ①항에서 가격인상 약속시 제3국이나 제품 변경을 통한 우회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반덤핑조치가 가해졌을 때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이는 물론 통상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우회수출이 국제교역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년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에 관한 덤핑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당국이 우회 내지는 변형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산 라이터의 경우, 조사가 실시되자 중국 수출업체는 일회용 라이터에 단순히 가스 주입구를 부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충전용 포켓 라이터로 변형,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려고 하여 정부는 제소업체 요청에 따라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 III. 우회수출에 대한 각국의 안

EU는 1987년 우회수출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덤핑조사를 실시한 후 회원국 내에 공장을 설치하거나 또는 생산을 증대하고 수입품의 50% 이상을 완성품 부품으로 사용할 경우, 그러한 국내 제품에 대하여도 (독립된 조사 없이) 반덤핑 규제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GATT 패널은 일본산 전자타이프라이터와 복사기 분쟁에서 이러한 EU의 규제가 GATT 제III조

(National Treatment Clause, 내국민대우 규정)와 합치되지 않는 조치라고 판정하였으며 그 결과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문제가 국제협상에서 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UR협상에서 미국과 EU는 반덤핑 규제조치가 실효성을 유지하려면 우회수출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는 우회수출의 규제가 궁극적으로는 국가간 투자와 자유무역을 저해한다고 반박하였다. 협상안으로서 덤핑수출국으로부터 중간재 70% 이상을 수입하여 수입국 내에서 조립된 제품에 관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조사 없이 부분품에 대해서도 반덤핑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던켈(Dunkel)안이 제시되었으나, 회원국간의 상당한 이견으로 우회수출의 규제에 관하여 결론을 맺을 수 없었다. 이는 수출국 시각에서 볼 때 우회수출은 정당한 기업행위이므로 덤핑조사가 결핍된 반덤핑 규제는 WTO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인 반면, 미국과 EU는 던켈안이 우회수출품의 의미를 너무 좁게 해석한다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회수출은 이행협정이 아닌 회원국 국내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지만 1993년 12월 마라케쉬 각료결정(Marrakesh Ministerial Decision)에 따라 WTO의 반덤핑관행위원회에서 우회수출에 대한 비공식모임이 조직되어 회원국간에 규제문제를 놓고 격론중이며 각료지침에 따라 WTO 실험상에서 우회수출에 대한 동 위원회의 입장이 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동 위원회에서 우회수출을 규제하려는 선진국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반덤핑관행위원회에서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동 위원회에서 우회수출을 규제하려는 선진국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반덤핑관행위원회에서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1. 던켈안

던켈안은 수입국 국내에서 생산된 동종 상품의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사당국은 '별도의 조사 없이' 기존의 반덤핑관세율 한도 내에서 우회수출된 부품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취하거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① 수입국 내 동종제품의 생산자가 반덤핑관세 적용제품의 생산자와 특수관계(affiliated)에 있거나 대리하는 경우
- ② 반덤핑관세가 적용되는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부품을 공급하였던 수출(생산)자로부터 수입부품이 공급되는 경우
- ③ 수입국에서의 제품생산이 덤핑조사가 개시된 뒤 시작되었거나 또는 부품 수입이 상당히

**미국 반덤핑법은 제3국이나 미국 내 생산의 일반적인 우회수출에 대하여 상당히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제품과 변형제품에 대해서도 우회수출의 기미가 보이면 규제를 가하고 있다.**

증가한 경우 ④ 수입부품 관련 총비용이 전체 부품 총비용의 70% 이상일 경우(단, 수입국 내에서의 조립 또는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가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25% 이상인 경우는 예외임) ⑤ 수입국의 완제품가격이 확정된 반덤핑제품의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의 증거가 있거나,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방지·상쇄하기 위하여 조립부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증거가 제시된 경우이다.

이에 비하여 EU는 역내에서 생산되어 우회수출되는 제품을 규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첫째, 반덤핑조치가 적용되는 동종물품의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조립·생산하였고 둘째, 반덤핑조사 개시 후 EU 역내에서 혹은 제3국 내에서 신규 생산이 시작되었거나 또는 상당히 증가하였고 셋째, 수출국에서 생산된 수입 부품 관련비용이 전체 부품관련 총비용의 50%를 초과하며, 마지막으로 우회수출로 인하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조치의 효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가능하다(Council regulation No. 2423/88, Article 13 10(a))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되 특히 조립·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변동비용과 EU에서 수행된 연구 개발 및 기술적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Parts Amendments).

## 2. 미국의 우회수출 조항

미국 반덤핑법(Title VII, Sec. 781)은 제3국이나 미국 내 생산의 일반적인 우회수출에 대하여 상당히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제품과 변형제품 그리고 생산공정에 있어서 덤핑제품보다 완성단계가 높은 후방산업의 제품(downstream product)에 대해서도 우회수출의 기미가 보이면 규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조립된 제품의 경우 ① 미국에서 판매되는 완제품이 덤핑 수입품과 같은 부류 또는 종류(of same class or kind)이고 ② 완제품이 덤핑 수출국에서 생산된 부품 또는 조립품으로 미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되었으며 ③ 미국에서 수행된 조립 또는 완성과정이 미미하거나 중요하지 않고 ④ 반덤핑조치 대상인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된 부품 또는 조립품이 완제품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때, 미국 상무성은 무역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한 후에 완제품에 대한 반덤핑명령에 동 부품 등을 포함할 수 있다((Sec. 781(a)(1)).

미국에서 진행된 공정과정의 중요도 평가에서는 미국 내에서의 ① 투자수준

② 연구개발수준 ③ 생산과정의 성격 ④ 생산시설의 규모 ⑤ 미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 등 5개 요소를 고려한다.

또한 당해 부품 등에 반덤핑관세를 실제로 부과함에 있어서는 ① 생산지 패턴을 포함한 무역패턴 ② 부품의 생산(수출)자가 당해 부품을 사용하여 미국에서 제조되는 제품의 생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③ 덤핑조사 개시 이후 부품이나 구성품의 수입이 증가하였는지를 감안한다. 한편,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수입품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다만 제3국 제품의 경우, 반덤핑조치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가 적절하다는 결정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우회수출 규제조항과 덤핑안을 비교해 보면 우선 후자의 경우, 동종 수입품이 우회수출의 규제대상인 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같은 종류나 부류에 속하는 제품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수입품 규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덤핑안에서는 수입부품 비용이 부품 총비용의 70%를 초과하고 또한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25% 미만인 경우에만 우회수출에 따른 제재조치가 가능한 반면 미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단지 '상당한'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회수출에 따른 적용대상이 매우 모호하며 이로 인하여 당국의 자의성이 개재될 여지가 상당하다(EU는 50%). 또한, 덤핑안에 의하면 수입부품 공급업체가 덤핑 수출자와 계약관계나 특수관계에 있어야 규제조치가 허용되는 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덤핑 수출국에서 생산된 부품은 일단 우회수출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고 특수관계는 반덤핑관세의 적용시 고려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 밖에도 EU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국내에서 증가된 부가가치가 미미한지를 가리기 위하여 국내 생산 및 연구관련 부문에 투자된 비중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당해 조항으로 말미암아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회수출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우회수출품에 대한 덤핑과 피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독립된 조사 없이 기존 품목에 적용되는 반덤핑 규제가 우회수출되는 제품에도 확대·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덤핑안에서는 우회수출품의 수입국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하여 볼 때, (우회)덤핑의 증거가 존재하거나 혹은 피해 방지를 위하여 수입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증거'가 존재해야 규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덤핑안은 반덤핑협정의 기본정신

**우회수출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우회수출품에 대한 덤핑과 피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독립된 조사 없이 기존 품목에 적용되는 반덤핑 규제가 우회수출되는 제품에도 확대·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의 입장은  
우회수출을 통한  
반덤핑조치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다면 제3국에서  
가공된 수입품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회원국은 덤핑에 따른 피해, 피해의 우려 또는 국내산업 확립의 지연을 상쇄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GATT 제6조 제2항과 제6(a)조항에 부분적으로나마 충실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입장은 우회수출을 통한 반덤핑조치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다면 제3국에서 가공된 수입품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회수출에 관한 판정이 근본적으로 덤핑판정을 받은 완제품에 대한 조사(original investigation)에 우회수출품이 원래 포함되었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scope decision)이므로 덤핑과 피해에 대한 조사는 완제품에 대한 조사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신제품이나 크게 변형되지 않은 제품 그리고 공정과정에서의 후방산업 제품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여 반덤핑조치를 기피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약간의 공정과정을 거친 원재료를 포함한 미미한 형태 또는 외관상의 변화를 거친 수입제품은 동 제품이 덤핑제품과 같은 HS(Harmonized System) 관세분류에 속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덤핑법의 조사대상이 되거나 또는 조사대상 제품과 마찬가지로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는다(Sec. 781(c)). 단, 예외적으로 신제품의 추가적 기능이 동 제품의 주요한 용도이며 그러한 기능의 생산비용이 제품 전체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부분 이상인 경우에는 동 조치의 적용이 면제될 수 있다. 또한, 미국 반덤핑법 제780조는 반덤핑조치가 어떤 수입품에 적용된 이후, 동 수입품을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후방산업의 제품수입이 증가하면 그러한 완제품에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sup>7)</sup>

#### IV. 우회수출에 대한 논의: WTO

##### 1. 경과

마라케쉬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우회수출에 대한 논의가 WTO 반덤핑관행위원회에 회부된 이래, 1997년 4월 동 위원회 산하에 비공식모임이 구성되었는데 현재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놓고 회원국들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례로 비공식모임에 대한 명칭도 위원장이 처음 제시한 비공식 실무모임

7) 감시대상이 되는 부분품은 5년간 최소한 15%의 반덤핑관세를 적용 받거나 또는 이와 동일한 덤핑마진율을 판정 받은 제품으로 동 부분품은 고유특성으로 인하여 일상적으로 허류제품의 주요재료, 조립품, 구성품 또는 부품으로 사용되는 수입품이어야 한다(Sec. 780(d)).

(Informal Working Group)과 홍콩 등이 수정·제안한 자문모임(Consultative Group) 중에서 미국과 EU는 정식절차의(즉, formality) 뉘앙스가 강한 전자를 선호한 반면 홍콩 등 아시아 국가는 비공식적 이름인 후자를 선호하였고, 결국 호주의 제안에 따라 '반회수출에 대한 비공식모임(Informal Group on Anti-Circumvention)'으로 귀착되었다. 이와 같이 명칭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격론을 벌인 배경에는 마라케쉬 각료결정 문안의 해석에 있어서, 각료들의 지침은 우회수출을 부당한 무역행위로 간주하고 위원회의 업무가 우회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조치를 제시하는 일이라는 미국 등 선진국의 주장과 각료결정의 지침은 우회수출의 규제가 필요하지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라는 아시아 국가 간에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sup>8)</sup>

한편, 반덤핑관행위원회에서는 전자저울과 3.5인치 마이크로 디스크에 대한 EU의 우회수출 조사에 관하여 홍콩, 아세안 국가 그리고 일본 등의 이의제기가 있었다<sup>9)</sup>. 마이크로 디스크의 경우, 홍콩은 EU의 조사가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피해, 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 확립의 지연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GATT 제6조 제6(a)항에 위배됨을 지적하였다. 덧붙여서 홍콩은 EU의 조사가 이행협정 제1조와 제18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항의하였다. 결론적으로 홍콩은 WTO 협정의 제 규정들을 초월하는 우회수출에 대한 예외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덤핑과 피해 및 그 인과관계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 없이 반덤핑조치가 취해지는 EU의 우회수출조항은 각국 반덤핑조치의 합치성을 요구하는 동 협정 제18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였고 아세안 제국과 일본도 홍콩의 법적 해석과 견해를 지지하면서 EU가 조사를 즉각 철회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EU는 반덤핑협정이 피해를 야기하는 덤핑에 대하여 규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규제조치는 효율적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당해 사례는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로 인하여 규제조치가 저해되고 있는 경우로서 조사에 관한 EU 규정은 명확하고 투명함을 강조하고 덤핑과 피해에 대한 검증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미국의 주장은 우회수출에 관한 조사는 반덤핑조치가 적용중인 제품에 우회수출품이 포함되었어야 하는가에 관한 결정(scope ruling)이며 덤핑과 피해에 대한 판정은 이미 완제품에 대한 조사에서 검증된 것으로 독립된 조사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결국 EU는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조사가 시작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당해 사례에서

**반덤핑관행위원회에서는 전자저울과 3.5인치 마이크로 디스크에 대한 EU의 우회수출 조사에 관하여 홍콩, 아세안 국가 그리고 일본 등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8) 마라케쉬 각료결정은 반덤핑명령의 우회문제가 이행협정 교섭과정의 일부이었지만 특정 문안(specific text)에 대하여 회원국이 동의하지 못하였음을 유념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일률적인 원칙을 적용(uniform rules)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시하면서 반덤핑관행위원회에 당해 사항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

9) 전자저울의 경우, 일본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입된 후 조립되어 EU로 수출되거나 EU로 부품이 수입되어 판매되는 사례가 조사 대상이었고 마이크로 디스크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제품이 홍콩,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제국을 통하여 수입되는 사례가 조사대상이었다.

**우리나라는 (우회수출에 대한)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회원국이 내국법을 통해 우회수출을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U법에 충족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인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1996년 반덤핑관행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제작된 전자저울과 EU로 유입되는 부품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가 GATT 및 WTO 원칙에 위반됨을 지적하고 인도네시아 제품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독립된 조사 그리고 부품은 부품 자체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를 통하여 반덤핑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우회수출에 대한)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회원국이 내국법을 통해 우회수출을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국내법의 일방적 적용은 현재 진행중인 우회수출에 대한 논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회원국이 우회수출조치의 확산을 피하고 국가간의 통일된 규정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관하여 EU는 합법적인 반덤핑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는 회원국의 권리임을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마라케쉬 각료회의가 우회수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에 유념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회수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기간 동안에 동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주장에 대하여 EU와 미국은 동 조치가 WTO 협정에 비추어 볼 때 합법적이며 UR 합의에서 취득한 회원국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은 반덤핑조치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한, 정당한 조치를 회피하려는 수출이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는 것이다.

## 2. 우회수출에 대한 각국의 견해

### 가. 미국과 EU

미국과 EU에 따르면 반덤핑 규제조치가 일정 제품에 시행된 후 우회수출은 다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아래 제시된 방식이 모든 우회수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첫째는 제품의 근본적인 성질을 유지하며 비슷한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제품의 미미한 변형으로 반덤핑관세를 면하려는 방식이다. 제품의 변경은 형태, 외양 또는 제품의 구성 및 공정과정 단계의 차이를 포함한다. 일례로 분말에서 반죽 또는 액체상태로 제품을 변형하거나 혹은 제품의 순도를 조절하여 반덤핑관세를 피하거나 HS관세분류를 달리하여 반

덤핑조치를 회피할 수 있다. 둘째, 덤핑조사의 개시와 함께 동종제품의 조립과정 즉, 생산기지를 제3국이나 수입국으로 변경하였지만 이러한 공정과정 (부가가치에 비추어 볼 때) 미미한 경우이다. 한 예로 완제품의 수입이 쉽게 조립될 수 있는 부분품의 수입으로 대체되거나 제3국으로 수출되어 조립 후 수입되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이때에는 반덤핑 규제 대상국과 제3국에서 제조된 부분품의 비율, 공정과정의 성격, 부가가치 그리고 부분품의 수입 증가 추세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야 한다. 셋째, 반덤핑 규제대상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여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이다. 넷째, 상기의 방식들을 혼용하면서 원산지, 관세분류 또는 제품가격을 부정하게 신고하는 경우이다.

#### 나. 캐나다와 터키

캐나다와 터키는 우회수출의 존재는 인정하되 미국과 EU와는 달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캐나다에 따르면 반덤핑관세의 우회는 수출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당 제품의 성격이나 생산 또는 조립장소의 변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넓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우회수출을 확인하려면 조사당국은 특정 사안에 관한 유용한 사실에 기반하여 문제가 되는 특정 수출자가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려 한다는 추정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우회수출의 시점, 제품의 변형 정도 등이 우회수출을 파악하는 데 적절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반덤핑 결정은 덤핑국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데 덤핑국이 아닌 국가로 공정이나 생산이 이전되고 원산지 규정상 제3국이나 수입국에서 판매된 동종제품이 그 나라의 제품으로 규정되면 우회수출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sup>10)</sup>. 또한 우회수출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피해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일례로 조사 개시 이후 변경된 제품의 수입 증가는 다른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우회수출조치는 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있다.

한편, 터키는 우회수입된 충전용 라이터를 예로 들면서 비록 반덤핑협정에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지만 현존하는 반덤핑조치를 회피하려는 우회수출품에 대한 조사 개시는 WTO 협약의 정신에 합치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취해지는 제품 외양의 미미한 변경 내지 변형은 우회수출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후 터키는 던켈안과 매우

**우회수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기간 동안에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주장에 대하여 EU와 미국은 동 조치가 WTO 협정에 비추어 볼 때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

10) 현재 원산지규정에 대한 WCO 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업중이다.

**일본과 홍콩은 반덤핑협정이 WTO 체제가 지향하는 무차별적인 무역장벽의 철폐에 예외적인 조항임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EU의 일방적인 우회수출 규제조항은 명백히 WTO 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한 규제안을 제시하였는데 다만 수입부품이 총부품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80% 이상)이나 수입국에서 첨가된 최소의 부가가치(20%)에서 덤핑안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준이 엄격하였다.

다. 일본과 홍콩(중국)

일본과 홍콩은 반덤핑협정이 WTO 체제가 지향하는 무차별적인 무역장벽의 철폐에 예외적인 조항임을 지적하면서 반덤핑조치가 WTO 이행협정에서 명기된 절차와 규정 즉, 반덤핑조치가 덤핑과 피해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이 없이 시행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환언하면 우회수출에 대한 논의는 현존하는 반덤핑협약의 규칙을 침해할 수 없는바, GATT 제6조 6(a)항은 덤핑수입품이 피해 등을 야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행협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하며 또한 제18조 제1항에는 1994년 GATT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덤핑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미국과 EU의 일방적인 우회수출 규제조항은 명백히 WTO 협약에 위반된다는 것이다<sup>11)</sup>.

일본은 잘못된 관세 분류나 원산지를 가장하기 위한 제품 위장 등을 우회수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기행위에 대한 GATT의 다른 규정 즉, 제20조 (d)항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므로 우회수출에 대한 또 다른 규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미한 제품의 변형에서 그 예로 미국이 제시한 98.5%, 99% 니켈이 유사한 제품으로 간주되면 1차조사에서 이러한 제품을 포함하는 조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이 다른 용도로, 다른 소비자에게, 다른 판매채널을 통하여 매매됨으로써 이들 품목은 다른 HS분류에 속하게 되는데, 이러한 예는 피해조사에 있어서 제품의 분류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며 궁극적으로 1차조사가 종료되고 한참 뒤에 덤핑제품의 정의를 확대하는 행위는 피해조사가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하였다는 것을 뜻하며 명확한 증거를 요하는 이행협정 제3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반덤핑협정은 이들 제품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회원국은 이에 알맞게 반덤핑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서 홍콩은 제품의 변형이 기술 개발과 생산비용의 감소, 소비자 기

11) 이 밖에도 "반덤핑조치는 오직 1994년 GATT 제6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시되고 수행된 조사에 따라서만 적용된다" (이행협정 제1조).

호의 변화, 그리고 부가가치의 증대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변형된 제품이 1차조사에 원래 포함되었다면 판정의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제3국이나 수입국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은 노임, 환율의 변동, 지역시장의 발전 등 반덤핑조치와 관계없는 생산의 국제화에 따른 추세이며 특히, 부품에서 당해 부품산업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결정이 있어야 한다. 즉, 부품산업은 독립된 개별적인 시장을 형성할 수 있고 완제품이 덤핑된다는 사실이 부품의 덤핑으로 단정될 수 없으며 덤핑판정은 반드시 부품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이 비교되어야 하는바 기존의 반덤핑협정이 이에 대한 독립된 조사를 허용하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3국을 경유한 수출품에 대한 취급방식은 이미 이행협정(제2조 제2항)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홍콩은 지금까지 예시된 사례들을 위하여 독립된 규제조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존하는 반덤핑협정은 예시된 우회수출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결국 기존의 반덤핑협정이 요구하는 절차를 우회(circumvent)하고자 하는 노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홍콩은 추가적으로 우회수출이 선진국의 수출자가 일반특혜관세의 혜택(GSP benefits)을 누리고자 후진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WTO에서 현재 논의중인 국가 공통의 원산지규정이 도입되면 제3국 내에서 미미한 공정을 거친 제품은 반덤핑관세가 적용되는 품목과 같은 제품으로 취급될 것이며 또한 HS 일반원칙 제2조 (a)항에 의하면 미완성 또는 미완료된 부품이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으면 이러한 부품은 완제품과 같은 관세분류에 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부품들은 반덤핑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논한다.

**현존하는 반덤핑협정은 예시된 우회수출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자는 것은 결국 기존의 반덤핑협정이 요구하는 절차를 우회하고자 하는 노력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 5. 평가 및 결론

WTO 협약 등 다자간 협상으로 무역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국제분업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여 현지에서 국산 수출재를 재가공,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의 순규모가 1995년 7억달러에서 1997년 11억달러로 증가하는 등 점차 생산공정의 국제적 분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무역패턴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기술발전에 따른 국제분업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예외 없는  
무역자유화를 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조치로서  
반덤핑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덤핑수입품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국제분업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반덤핑규제나 세이프가드를 기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려는 선진국 입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부품이나 완성단계가 다른 산업에 대한 덤핑 등의 독립된 검증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회수출품을 불공정무역으로 간주하는 행위는 현존하는 WTO 협약의 규정과 합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WTO 정신에도 위배된다. 또한, 자의적인 제도 운영으로 반덤핑제도가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는 자유무역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우회수출 규제에 집착하는 이유는 완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수입품에 내재된 수입국 부품의 비율이 상당하면 우회수출에 따른 규제를 면제시켜 주는 조항을 삼입함으로써 자국 부품의 사용과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우회수출 조사 자체가 수입을 규제하는 효과(terrorem effect)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쉽게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지 않을 것이며 WTO 신협상에서도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집착하리라고 예상된다.

요컨대 WTO 출범 이후 일반관세 등의 각종 수입장벽이 철폐되면서 반덤핑제도는 자유무역의 예외적 국제규범으로 고착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무역자유화가 더욱 진전되면 산업정책적 수단으로서의 반덤핑제도는 그 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예외 없는 무역자유화를 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조치로서 반덤핑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일반관세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수세적 입장에서 정당화될 수밖에 없는 반면 반덤핑관세는 일단 수출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핑계삼아 수입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진국의 통상전략은 무역자유화라는 이름으로 각국의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경쟁력 없는 국내산업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반덤핑조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이란 우선 WTO 등 국제무대에서 일본 등 주요 수출국과 협력하여 반덤핑제도의 폐해를 주지시키고 동시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WTO 반덤핑관행위원회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우회수출의 규제문제에 대하여 이를 통하여 반덤핑제도가 확대·적용될 때 따르는 국제무역의 심각한 왜곡과 폐해를 회원국들이 숙지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선진국에 의하여 제기된 우회수출 사례가 명확한 덤핑범위의 규정과 HS 및 원산지규정 그리고 사기행위를 금지하는 GATT 제20조(d)항에 의하여 규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WTO 협정이 동종제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물리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존 WTO 협정에서 별도의 규정 없이 변화된 상황에서 불공정한 우회수출이 충분히 규제될 수 있음을 주시시켜야 한다. 이후 우회수출에 대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보이면 규제안이 가능한 한 투명하고 엄격하게 규정되도록 노력하되 구체적으로는 수입부품이나 수입국 내 부가가치의 비중이 엄격히 적용되도록 하고 반드시 우회수출로 인한 피해조사가 선행되도록 주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관세법에서 가격 인상 약속시 제3국이나 제품 변경을 통한 우회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이는 통상정책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정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미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 수입품 중에도 우회수출되는 제품이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형태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가 우회수출을 명시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반덤핑조치를 적용한 결과 변형제품이나 우회수출품의 수입이 증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조사당국은 무역패턴의 변화를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불공정한 우회수출의 기미가 있으면 신속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덤핑제도는 수입 규제뿐 아니라 특정산업에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자원 배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결과를 유발하므로 국가경제 차원에서 그 파급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덤핑제도에 대한 국제협상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정책당국이 굳이 반덤핑조치를 적용한다면 우회수출의 방지 등 동 조치가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반덤핑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동 제도가 투명하게 적용됨으로써 개별 산업뿐만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KITA**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이란  
우선 WTO 등  
국제무대에서 일본 등  
주요 수출국과 협력하여  
반덤핑제도의 폐해를  
주시시키고 동시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과 조세·재정정책



崔 瀾 旭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기후변화협약은 단순한 환경협약의 차원을 넘어서서 경제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국제협약이다.

## 1. 서론

경제의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내정책이 대외적 여건의 변화와 국제규범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국제규범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기후변화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원래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가 온난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이다. 하지만 현대문명에서 인간의 경제활동과 온실가스 배출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은 단순한 환경협약의 차원을 넘어서서 경제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국제협약이다.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경제학자들이나 정책당국자들의 관심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된 연구도 부족하다. 이러한 무관심은 부분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이슈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큰 이유는 아마 우리나라가 현재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를 지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것을 당면한 일이 아닌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우리나라가 현재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태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후변화협약은 결코 먼 미래의 문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니다. 만약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려 할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비록 우리나라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이미 이른 시점이 아니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협상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연구가 좀더 본격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의 영향이 워낙 커서 향후 경제정책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지 에너지부문만이 아니라 경제 각 분야에서 그 의미와 대응책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의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인 탄소세의 도입은 향후 조세정책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도 향후 조세 및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고는 그 중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아직 연구가 초기단계일 뿐 아니라, 본고에서는 지면에 비해 다루는 주제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와 정책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발간될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다.

## II. 기후변화협약

### 1. 기후변화협약의 개요

기후변화협약의 공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으로 1992년에 채택된 기본협약과 1997년의 제3차 당사국 총회를 통해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FCCC)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지구의 기후체계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다.

기본협약은 전문과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의 의무사항, 재정지

**우리나라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이미 이른 시점이 아니다.**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지구의 기후체계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다.**

원체제, 기술이전, 조직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국의 의무사항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각국이 취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의무사항과 특별의무사항으로 대별된다. 일반의무사항은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되는 의무사항으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에 대한 국가통계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의무, 기후변화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의무사항은 부속서 I (Annex I) 국가들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우리나라와 멕시코를 제외한 OECD 국가들과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원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할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의 의무가 있으며, 국내의 온실가스의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목표는 단지 원칙적인 목표일 뿐, 구속성 있는 의무는 아니다. 즉 비록 기본협약에서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원칙이 천명되었지만, 각 국가들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각국의 구체적인 감축량은 1997년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자 총회에서 결정되어 교토의정서에 포함되어 있다.

## 2.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의 가장 큰 의미는 부속서 I 국가들의 감축목표(QELROs)가 구체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구체적인 감축의무가 시작되는 1차 공약기간은 2008~2012년으로 결정되었으며, 이 기간중 부속서 I 국가들의 국가별 허용배출량(5년간의 평균)은 자국의 1990년 배출량 대비 증가율로 정해졌다. 평균적으로는 1990년 대비 약 5.2%를 감축하게 되어 있으며, 각국의 차등화된 목표량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의 범위를 CO<sub>2</sub>, CH<sub>4</sub>, N<sub>2</sub>O, HFC, PFC, SF<sub>6</sub> 등의 6개 가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림 등 이산화탄소 흡수원에 의한 흡수량을 감안한 순배출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흡수원에는 1990년 이후의 인간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 변화분 및 조림으로부터 발생

〈 표 1 〉 교토의정서에 따른 국가별 감축의무

(단위 : %)

감축비율 (1990년 대비)	나라 수	국 가
- 8	26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영국,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 7	1	미 국
- 6	4	캐나다, 헝가리, 일본, 포르투갈
- 5	1	크로아티아
0	3	뉴질랜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 1	1	노르웨이
+ 8	1	호 주
+ 10	1	아이슬란드

교토의정서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각 국가는 국가별 감축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감축이 반드시 국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된 것 중 확인 가능한 변화만을 반영한다.

교토의정서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국가별 감축의무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각 국가는 국가별 감축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감축이 반드시 국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국가간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배출권 거래제를 비롯하여,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등이 모두 감축의무의 유연성 방안에 포함된다. 국가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온 제도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정이지만 제도의 허용은 사실상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이행(JI, joint implementation)은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두 나라 이상이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이행으로 인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당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원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부속서 I 국가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이행도 부속서 I 국가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개도국들이 부속서 I 국가들로부터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을 받는 체제를 의미한다. 청정개발체제의 설치 목적은 개도국의 지속적인 개발과 부속서 I 당사국이 의정서상의 감축목표의 일

**아직 기후변화협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를 달성하는 것을 상호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이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개도국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청정개발체제를 통해서 선진국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 3. 최근 동향

교토의정서를 통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구속력 있는 문건을 채택하였지만, 교토의정서에 언급된 내용의 구체적인 실천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사항들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미합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각 국가별로 서명과 비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약이 발효되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차 당사국 총회 이후의 실무회담 및 1998년의 4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기본적인 내용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협상의 핵심이 되었다. 그러나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입장 차이가 커서, 아직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가지 성과는 교토의정서 내용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2000년 말까지 합의하기로 정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실천계획의 채택이다. 이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00년까지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문제는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것이다.

## III.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 1. 기후변화협약과 우리나라

아직 기후변화협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후변화협약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일단 현재까지 추진된 기후변화협약의 결과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까지 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해진 감축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정책시사점을 준다. 첫째, 지구온난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 이상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진국의 압력이 커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 2. 우리나라 의무의 결정 요인

미래에 기후변화협약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나라가 협약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가지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먼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가. 개도국 참여문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도국 참여문제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개도국의 참여문제는 협약 초기부터 첨예한 대립 내용 중의 하나였으며,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로 기본협약에서 개도국의 감축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도국 참여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1997년 7월 미국 상원의 결의에 따른 것이며, 미국은 개도국도 200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공약을 천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은 소위 주요 개도국(key developing country)이라는 카테고리를 제시하면서, 한국 및 멕시코 등 OECD 신규 회원국 그룹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EU도 선발개도국이 기존의 부속서 I 국가와 같은 감축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회의 때마다 강조하였다.

향후에 개도국의 참여문제에 대한 논의가 언제부터 어떠한 형태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볼 때, 현재 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는 선진국의 양적 감축 관련 구체적 이행사항에 대해서 2000년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개도국의 참여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4차 당사국 총회에서 아르헨티나가 2008년부터는 자발적 감축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멕시코 등 선발개도국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선진국들의 압력이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해진 감축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에 불충분하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또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게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은 향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중국이나 인도 등 대규모 배출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기 위한 전략적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절대배출량도 세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을 고려하면, 1995년에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다<sup>1)</sup>.

온실가스의 절대배출량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율이다. 1986~1995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8.9%였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10.3%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비교적 배출량이 큰 나라 중에는 중국과 더불어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2010년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세계 6위, 2030년에는 세계 2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물론 이러한 전망치가 다소 과장된 면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또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게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 기타 요인**

위에 고려한 요인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각국의 이해관계도 우리나라의 감축의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과도한 감축의무를 부여받되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의 참여가 허용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하고자 할 것이며, 국제시장에서의 배출권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국제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고자 계획하는 미국 등은 우리나라에게 무조건 과도한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다소 낮아진다. 반면, 배출권을 판매하려는 국가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과도한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선진국들간에도 상반된 이해관계가 상존한다.

개도국들의 입장 역시 상반된 면이 있다. 산유국들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강한

1) 다른 종류의 온실가스에 대한 통계가 사용이 용이하지 않아 일단 이산화탄소만을 고려하였다. 이 통계는 IEA/OECD(1997)에 따른 것이며, 일부 문헌에서는 한국의 배출량을 세계 10위권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감축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반면, 도서국가(AOSIS)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강력한 감축의무를 가지기를 원할 것이다. G-77을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양면적인 입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한국에 대한 강한 의무를 다른 개도국에 대한 압력의 첫 단계로서 인식하여 이에 반대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한국이 자신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측면도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 내에서도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상존한다. 그리고 때로는 실리적 이해관계만이 아닌 이념적인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어떤 형태나 강도로 압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 미래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감축의무를 가지게 될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커서 신뢰성 있는 예측이 힘들다. 이는 외교적 노력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감축의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협상과 외교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미래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감축의무를 가지게 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서 신뢰성 있는 예측이 힘들다. 협상과 외교적 노력에 따라 감축의무가 달라질 수도 있다.**

### 3. 경제적 파급효과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한 점은 아마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의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가상적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각 상황별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추정한 몇몇 연구결과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바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일부 글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파급효과가 매우 과장되어 표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글에서는 “... 2020년에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56% 줄여야 하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이 사실이 아님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오해는 언론의 보도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연구자들은 보통 몇 가지 가상적인 시나리오하에서 기후변화협약의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나리오 중에서는 현실성이 낮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언

**파급효과를 의도적으로  
과대추정하는 것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단지 국민들로 하여금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향후 정책 수행에서  
어려움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론의 보도 과정에서는 주로 비판적인 경우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비용을 과다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은 보통 CGE 모형 등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에 있어서 기준 시나리오의 설정, 모형에서의 생산 함수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비용의 추정치는 큰 편차를 보이게 된다. 물론 모형화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형도 실제 비용을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모형화의 한계를 감안 하더라도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비용을 과다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파급효과를 과대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파급효과를 의도적으로 과대추정하는 것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단지 국민들로 하여금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향후 정책 수행에서 어려움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협상과 정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4. 우리나라의 참여와 협상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일반적이다. 때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은 절대 불가능하므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의 압력을 받게 된다면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의 불이행이나 탈퇴로 인한 비용은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때로는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 기후변화협약이 이미 세계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부터의 탈퇴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의미하며, 그로 인한 간접적인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의 탈퇴로 인한 비용이 매우 크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에 불참한다는 것은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은 수밖에 없으므로, 협상과정에서 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의 탈퇴를 강조하는 것은 효과적인 협상전략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 단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의 온실

가스 배출량이 세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있고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의 탈퇴나 OECD의 탈퇴와 같은 극단적 방법보다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과도하게 감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좀 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GDP의 몇 %로 표시된 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선진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우리의 감축의무를 자발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논리는 마치 조세이론의 수직적 형평성의 개념 및 희생(sacrifice)에 관한 이론과 유사하다. 단순한 설득논리지만, 기후변화협약이 추구하고 있는 형평성의 개념과 일관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관철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따른 파급효과는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로 표시된 온실가스 감축비용과 일치하는 배출량을 추정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CGE 모형의 개발과 이를 통한 추정 등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의 탈퇴나 OECD의 탈퇴와 같은 극단적 방법보다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과도하게 감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좀 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V. 조세 및 재정정책

### 1. 조세정책

#### 가. 기후변화협약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협약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몇 가지 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탄소세 등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에너지 과세를 강화 둘째,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의 억제를 위해 환경세를 활용 셋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대한 조세지원 넷째, 현재의 조세제도 중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과다하게 만드는 제도의 개편 등이다. 그리고 비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세정책은 아니지만,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이 실제로 조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온실가스 감축의

**기후변화협약이  
실제로 조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무의 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폭을 감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에너지 과세를 강화하거나 탄소세를 도입하여야 하며, 이는 조세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의 단계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이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매우 힘들다. 가장 큰 이유는 향후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도 정확한 예측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기술 발전이 빨라져 온실가스 감축이 의외로 쉬운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나. 탄소세와 에너지 과세**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국제적인 탄소세의 도입이 오래 전부터 논의되었지만 결국 결렬되었고, 실제의 협약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할당이 라는 형태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국내에서의 탄소세 도입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각국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에너지 과세를 강화할 수 있다. 탄소세가 도입되는 경우 그것은 조세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탄소세의 과세 배이스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 고려하는 시나리오처럼 TOE 당 10달러 정도의 탄소세만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 세수는 현재의 부가가치세 세수를 훨씬 초과한다. 만약 이 정도의 탄소세가 도입된다면,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산업경쟁력이나 소득재분배 측면 등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에서의 탄소세의 도입이 타당한지는 향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부여받게 될 온실가스 감축의무 및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고율의 탄소세를 서둘러 도입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소세 도입의 타당성 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다. 기타 환경세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환경세의 도입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잠정적인 결과로는, 현실적 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환경세 대신 직접규제나 자발적 동의 등의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환경세가 활용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의 세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탄소세 이외의 다른 환경세가 조세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라. 세제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그 중 일부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은 이미 제기되고 있다. 조세지원의 문제점은 그것이 세수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새로운 부담이다. 따라서 조세지원은 지원규모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분야에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조세지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늘리게 하는 요인이 있는 조세제도나 조세지원, 보조금으로 인한 왜곡을 교정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경제 효율성을 높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미 제공되는 조세지원이나 보조금을 폐지·개혁하거나 현재의 조세제도를 더욱 개편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이며, 탄소세 도입 등의 정책보다 더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서 이행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폐지 또는 개혁 대상의 목록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2. 재정정책

#### 가. 새로운 재정지출소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조세를 통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이나 기타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정책은 세수입을 가져오지만, 다른 많은

국내에서의 탄소세의 도입이 타당한지는 향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부여받게 될 온실가스 감축의무 및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조세를 통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이나  
기타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정책은 세수입을  
가져오지만, 다른 많은  
정책들은 오히려  
재정지출을 필요로 한다.**

정책들은 오히려 재정지출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전체로 볼 때는 매우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며, 이는 재정으로부터의 지출을 필요로 한다. 이외에도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정책은 다양하다. 각 분야의 연구자는 폐기물 부문에서는 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농업부문에서 새로운 품종의 선발 및 육성을 위한 재원, 축산 부문에서의 메탄가스 감축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출 이외에도,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보상하기 위한 간접적인 비용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개편의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보전을 위해 이전지출을 하는 경우, 또는 특정산업이나 지역경제가 급격히 축소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대책비용 등도 생각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일부는 정책 도입부터 실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부 정책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확정되기 이전에 미리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출 소요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가시화될 것이다. 일부 지출의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의 개발에 정부가 지출을 하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나. 지출 효율화**

다양한 지출소요가 발생할 때는 선택의 문제가 생긴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비교하여 비용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즉 효과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출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사업 우선순위의 결정자, 또는 예산편성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는 각 부처에서는 정책의 연구과정에서부터 각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비용을 정확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사업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식은 단년도 사업평가가 아닌 다년도 사업평가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평가를

위한 정보도 이에 부합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3. 기타 정책방향

#### 가. 비용의 부담과 기술개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모두를 정부가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담을 개인과 정부가 적절히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책을 구상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우선 오염자부담 원칙에 근거하되, 정부지출로 인한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큰 경우와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외부성이 큰 기술개발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과 관련된 지출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성과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출우선순위라는 문제보다는,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술개발을 위해서 민간과 정부의 공동연구체제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토의정서는 CDM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개도국으로 이전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나라는 아직 개도국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 나. 이행의 속도와 지역경제에 대한 고려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집단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는 광산이 문을 닫게 되거나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의 고용이 감소함으로써 지역실업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급격한 이행은 한 지역이나 집단에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다른 부문에서 흡수하기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 집단에서의 희생이 커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상을 위한 재정지출의 규모도 커진다. 이와 같이 발생하는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대한 보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서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정 지역에 에너지 산업이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온실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비교하여 비용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대한 보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서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스 감축을 위한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이들 지역에서의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는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다. 금융정책

온실가스 감축정책에서 금융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장비의 교체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용면에서도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에너지 절약 기술 등과 관련된 특별금융제도를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라. 기후변화에의 대응

비록 본고의 주된 주제인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은 아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진행된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의 과정을 늦추는 역할만 할 뿐, 지구온난화 자체를 방지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는 계속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직까지 지구온난화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기후변화가 엘니노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이론도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규모 호우 등 기상이변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재정지출 계획을 세울 때 기상이변으로 인해 추가적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 VIII. 요약 및 결론

기후변화협약은 세계경제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비록 아직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시점이 그리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협약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무조건 비판적인 것만은 아니며, 적절한 외교적 노력과 정책 대비를 통해서 부

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외교적 노력이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된 기초연구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은 조세 및 재정정책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탄소세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조세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이 조세정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나 제반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서는 효과적이지만, 대외경쟁력 등에서 부정적 파급효과도 클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서둘러 탄소세를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향후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정책 중 상당수는 새로운 재정지출 수요를 발생시킨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정책에 대해 좀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에서 새로운 많은 정책이슈가 생기고 있으므로 관련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김기**

**향후 재정지출 계획을 세울 때 기상이변으로 인해 추가적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조세의 이해

- 관세 -

일반적으로 조세는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납세자들이 우리 조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때,  
조세정책에 대한 논의가 더욱 진지해질 수 있는 것이다.  
본란은 일반 납세자가 우리나라 조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목 및 주제별로 비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개념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편집자 주>

張 槿 鎬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I. 개요

관세는 주로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따라서 관세는 소비세이자 간접세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생활필수품과 원재료에는 가볍게, 사치품이나 완제품에는 무겁게 부과되는 특징이 있다. 이 밖에도 관세는 산업정책의 수단이자 재정 수입원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양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관세를 주로 수입품가격에 일정률을 부과하는 세금(중가세)으로 운용하고 있고 수입품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관세정책은 포괄적 의미에서 관세율정책뿐만 아니라

수입통관, 평가 및 보세제도 등을 포함하며 좁은 의미로는 관세수준을 결정하는 관세율정책 및 정책의도에 따라 관세수준을 경감내지 환급하는 관세감면 및 관세환급제도가 있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탄력관세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 II. 관세율정책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율 체계를 살펴보면 1983년까지는 제품의 완성단계가 높을수록 고율이 부과되는 차등관세율 체계(Tariff Escalation System)를 유지하여 왔으나, 1983년 이후부터는 모든 수입품에 원칙적으로 균등관세율을 적용하는 균등관세율 체계(Uniform Rate System)로 전환한 바 있다.

중심 관세율도 제1·2차 관세율인하예시제(1984~1988, 1989~1994)를 통하여 1994년 이후 8%로 인하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관세율 체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다만 국산화가 곤란한 비경쟁 1차 가공품은 5%를 적용하고, 비경쟁 수입원재료는 1%, 경쟁 수입원재료는 3%의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표 1〉 참조).

정부가 균등관세율 체계를 도입하게 된 정책배경으로 우선 수출지향적인 산업구조의 확립이 제시될 수 있다. 즉, 내수산업에 대한 과잉보호의 철폐로 내수 위주의 자원배분을 시정함으로써 수출지향적인 산업기반을 확립하여 고도성장의 기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품목간 균등관세로 불평등 시장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관세는 주로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따라서 관세는 소비세이자 간접세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생활필수품과 원재료에는 가볍게, 사치품이나 완제품에는 무겁게 부과되는 특징이 있다.

자원배분을 피하며, 셋째, 차등세율구조의 완화로 조립가공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를 확립하며 넷째, 물가안정기반 구축, 공업

용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로 실질소득 향상 및 임금 인상 압력이 완화되어 물가안정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실행관세율이 평균법정관세율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수입구조상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원재료와 중간재에 수입이 편중되었기 때문이다. 1997년도의 법정관세율은 7.9%, 실행관세율은 4.3%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세환급, 감면제도와 할당관세를 감안하면 국내산업의 실질관세부담은 1997년 현재 약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1〉 관세율구조 개편원칙

(단위: %)

		1988	1989	1990/91 <sup>1)</sup>	1992	1993	1994 이후
원료	비경쟁원료	5	1~2	1~2	1~2	1~2	1~2
	경쟁원료	10	5	5	5	4	3
중간재 및 완제품	중심세율	20	15	13	11	9	8
	경쟁력 확립 및 국산화 곤란 품목	10~20	10	10	10	9	8
	(1차 가공품)	(10~20)	(10)	(10)	(9)	(7)	(5)
	사치성 소비재	30~50	20	16	13	10	8
	자동차	50	25	20	17	15	10
							(95:협8)

주: 1) 수입품에 대한 방위세(2.5%) 폐지에 따른 사실상의 세부담 경감을 고려하여 관세율인하예시제를 1991년부터 1년씩 순연함.

한편, 관세율 인하와 환급제도 등 각종 관세감면제도의 운영으로 관세의 재정기여도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관세수입이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현재 6.5%에

불과하며 이는 관세율인하에시제가 실시된 1983년의 기여도 12.8%와 비교하면 조세비중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은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던바, 앞으로 현행 (중심)관세율의 적정성 여부와 균등관세율 체계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과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향후 관세율정책의 기초는 그 동안의 균등관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산업정책적 수단으로서 유망산업의 경쟁력 배양과 역관세 시정 등의 정책목표를 위하여, 탄력적 대

앞으로 현행 (중심)관세율의 적정성 여부와 균등관세율 체계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과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향후 관세율정책의 기초는 그 동안의 균등관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산업정책적 수단으로서 유망산업의 경쟁력 배양과 역관세 시정 등의 정책목표를 위해, 탄력적 대응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응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III. 탄력관세제도

우리나라 관세법에 규정된 탄력관세제도에는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혹은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조정관세, 긴급관세, 농·수·축산물 특별긴급관세가 있고 이 밖에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보복관세와 원활한 물자수급·가격안정·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세율을 증감시키는 할당관세, 편익관세 그리고 계절관세가 있다. 이 중 현재 폭넓게 운용되고 있는 탄력관세제도로는 조정관세, 할당관세, 덤핑방지관세가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증

〈표 2〉 우리나라 관세율의 변화 추이

(단위: %)

	평균관세율		관세환급률	조세수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	국세수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
	법정관세율	실행관세율			
1983	23.7	7.0	4.5	12.8	14.6
1988	18.1	7.3	4.9	11.4	13.2
1991	11.4	5.5	1.6	9.0	11.3
1992	10.1	5.2	1.5	7.1	9.0
1993	8.9	4.3	1.4	5.7	7.4
1994	7.9	4.2	1.2	5.7	7.3
1995	7.9	4.4	1.2	6.4	8.2
1996	7.9	4.4	1.2	6.4	8.2
1997	7.9	4.3	0.9	6.5	8.3

주 : 법정관세율은 품목별 법정관세율을 단순평균한 수치이며 실행관세율과 환급률은 각각 수입액 대비 관세징수액과 환급액임.

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무역정책을 시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요 탄력관세의 운용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정관세의 운용은 최근의 수입추이와 수입의존도, 국내외 가격차 등에 따른 경쟁여건과 국내산업기반 유지를 그 기준으로 하되, 적용세율은 UR 양허세율 범위 내에서 주요국의 관세율, 유사품목간의 형평성, 요청세율 등을 고려한 '적정수준'에서 결정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유사품목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본세율에 40%포인트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내지 인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또는 일정 수입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산할 수 있고, 농림·축·수산품에 대하여는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는 총리령으로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의 피해 등이 발생할 때 당해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 당해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 이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한다. 이때 정상가격은 신청물품과 동종물품이 공급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며, 특수한 상황에서 통상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국의 수출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판매 및 일반관리비와 합리적인 이윤을 합한 가격(구성가

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WTO 반덤핑협정 제9조 제1항과 관세법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조사된 덤핑률이 산업피해 구제수준보다 높은 경우 산업피해 구제수준을, 반대의 경우에는 조사된 덤핑률을 덤핑방지관세로 부과하고 있다.

탄력관세 운영상의 문제점은 품목에 따라 적용시한이 6개월에서 3, 4년까지 다양하고, 사양산업인지 혹은 유망산업인지의 구분 없이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어떤 품목은 긴급대상으로 하고 어떤 품목은 조정대상으로 하는 등 운용상의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력관세의 운용은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대외적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IV. 관세환급제도

관세환급제도란 수입된 원재료가 수출품에 사용되었을 경우 당해 원재료에 부과·징수된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제도를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세환급제도는

관세환급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환급액의 산출기준에 따라 크게 정액환급제도와 개별환급제도로 나누어진다. 정액환급제도는 관세청장이 미리 정하여 놓은 정액환급률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금액을 소요 원재료 수입시의 납부세액으로 간주하여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반면, 개별환급제도는 수출업체가 수출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 받은 관세를 소요량증명서 및 수출면장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환급받는 제도이다.

정액환급제도에는 환급절차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자료의 미비로 인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간이정액환급제도와 수입시기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과다 및 과소 환급의 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가 있다.

개별환급제도에는 일반개별환급제도와 동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지급·후심사제도 등이 있는데 지난 1997년에는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개별환급으로 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 등 정책목적상 환급금의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지급제한물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부산물 공제비율만큼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개별환급을 이용하는 업체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입한 원

재료를 월별·HS 10단위별로 통합하여 전체 물량의 단위당 평균세액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평균세액증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환급제도는 환급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개별환급은 수출업체 입장에서 볼 때 정확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환급계산 및 구비서류의 과다 등으로 많은 환급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반대로 정액환급은 적은 비용으로 쉽게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평균개념에 의하여 환급금을 산출해야 하므로 실제보다 과다·과소 환급될 수 있다. 따라서 사후정산제도, 정액환급제도와 기업 자율에 의한 소요량제도의 확대 그리고 환급업무의 효율적인 전산화 등 다방면에 걸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V. 관세감면제도

관세감면제도는 크게 산업감면, 비산업감면 및 협약감면으로 분류된다. 산업감면은 특정 산업에 대한 감면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기능별 감면으로 구별되며, 비산업감면은 부문별 균형발전, 복지향상, 학술지원을 위

〈표 3〉 관세감면의 분류 및 내용

분류	감면내용
산업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산업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산업기자재 감면 항공기제조용 원료품 감면</li> <li>- 방위산업시설기자재 및 원자재 감면</li> <li>- 해저광물탐사장비 감면</li> <li>- 외자도입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산업 감면 등</li> </ul> </li> <li>○ 기능별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자동화 물품 감면</li> <li>- 산업기술·연구용품 감면</li> <li>- 산업재해예방물품 및 오염물질·폐기물처리물품 감면 등</li> </ul> </li> </ul>
비산업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C : 지하철 건설용품 등 사회간접자본지원 감면</li> <li>○ 보건 : 수질측정, 가족계획, 장애인용품 등 감면</li> <li>○ 학술진흥 : 각종 과학연구·교육물품 감면</li> <li>○ 농수축산물부문 감면</li> <li>○ 기타 : 정부물품, 군수물품 등</li> </ul>
협약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활동보장, 국제적인 인적·물적교류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채택된 각종 국제협약에 근거한 감면</li> </ul>

한 지원감면을 말한다. 그리고 협약감면은 관세분야의 국제협약 및 국제관례에 따른 감면을 의미한다. 이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의 진흥, 국내생산이 곤란한 수입기자재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감면제도는 대산업(對産業) 중립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현행 8%의 중심관세율로 수렴한 기본방향을 품목별로 깨뜨려 산업간·품목간 균등관세율정책 원칙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세수입의 감소, 관세면세혜택의 만성화, 산업별 관세감면의 특혜문제, 관세감면에 따른 사후관리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정

부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매년 감면율을 축소하고 있다.

## VI. 기타제도

### 1. 관세평가제도

현행 관세법에서는 수입제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①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관세법 제9조의 3), ②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관세법 제9조의 4), ③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관세법 제9조의 5), ④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관세법 제9조의 6), ⑤ 해

당물품의 제조원가를 기초로 한 방법(관세법 제9조의 7), ⑥ 기타 합리적인 방법의 여섯 가지로 나누고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물품이 수입자에게 판매된 것이 아니거나 계약상의 어떤 조건 또는 특수관계자의 거래로서 제1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3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수입자는 제4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제5방법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만약 수입자가 요청하였으나 제5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4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2. 보세제도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세부과를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보세제도는 보세구역제도와 보세운송제도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현행 관세법에 규정된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 지정(세관)검사장)과 특허보세구역(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이 있다.

1993년 12월과 1994년에 각각 관세법을 개정하여 각종 원자재 혹은 수입물품 등이 입항 즉시 생산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의무보세구역장치제도를 폐지하여 하역 즉시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 하였고, 반출 후에 관세

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절차와 납부절차를 분리하였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와 수입물품 보세운송의 경우도 허가제에서 신고만으로

도 반입 및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 흐름의 신속화를 도모하였다.

## 3. 수출입통관제도

수출입관련제도들은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제도들과 상호 조화를 이룸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물류비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1995년의 경우 수출액 대비 17% 정도를 물류비로 지출하였는데 이는 선진국에 비하여 7~10% 정도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이 물류비용이 높은 것은 도로, 항만 등 SOC의 부족에 기인되는 면도 있으나, 아직도 매끄럽지 못한 수출입제도와 절차, 관행 등에 의해 통관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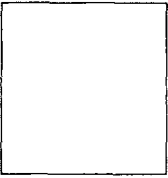
수출통관의 경우에는 EDI의 실시로 인해 신고 즉시 처리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수출신고에 필요한 PC 등의 전송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없는 영세무역업체를 위하여 '영세 수출업체를 위한 수출통관 제도'를 도입하여 무역협회 지부 및 지방상공회의소 등 전국 26개 장소에 전송설비를 갖추어 영세무역업체가 저렴한 비

용으로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998년 6월 1일부터 운영).

수입통관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보면 1994년도 기준으로 4~6배 정도가 더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부산항으로 수입된 컨테이너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부두에서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부두직통관제도를 1998년 6월부터 시행하여 수입물품의 운송·보관에 따르는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수입신고를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할 수 있도록 출항전 수입신고, 입항전 수입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세장치장으로 반입 전·후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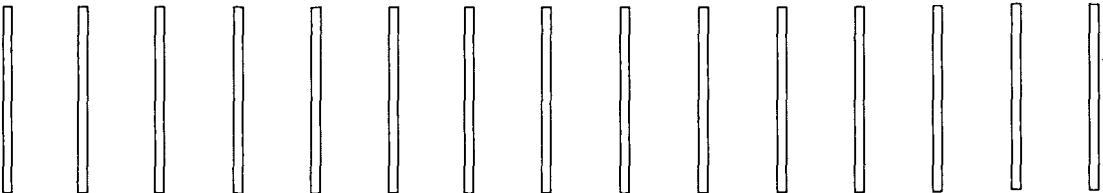
## Ⅵ.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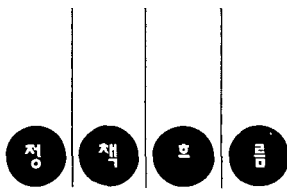
WTO 체제 내에서 농산물에 관하여 예외 없는 관세화 등 각종 비관세장벽이 철폐됨에 따라서 대산업정책으로서의 관세정책은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여지가 많다. 특히, 관세정책은 반덤핑관세를 포함한 각종 단력관세 및 관세환급제도와 보세제도 등을 포괄하고 있어 수입규제뿐만 아니라 수출지원도 가능한 제도이다. 다만 관세제도를 통한 특정 산업의 보호는 수입규제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있다. 즉, 한정된 국내자원이 경쟁력 없는 산업으로 유인될 때 이는 반드시 다른 산업에 대한 상대적 피해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당국의 신중한 정책운영이 필요하다. KDI



# 정책흐름

1.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준조세 정비
2. Mutual Fund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3. 근거과세기반 구축을 위한 기장신고자 확대사업 추진
4. 1998년 5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상황
5. IMF가 발표한 "아시아 경제위기 국가에 대한 정책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 재정정책 관련부문 -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준조세 정비

※ 이 자료는 기획예산위원회 행정개혁단 행정1팀에서 1999년 1월 20일에 발표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준조세 정비」의 전문입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년 8월 17일 확정된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그동안 정부출연·위탁기관이 일반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던 회비, 수수료, 분담금 등 준조세 16건을 폐지 또는 인하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금년 1월부터는

-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자가 신규면허 취득시 또는 면허 갱신시 납부하거나 자가용승용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시 납부하는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분담금이 평균 13% 인하되고
- 승강기 제조·판매자가 납부하는 승강기안전검사 수수료, 석유류제품 제조·판매자가 납부하는 석유제품검사수수료 등 6건의 검사수수료가 평균 10%씩 인하됨.
- 또한 내수 목적의 상품 수입시 부과하던 ASEM 회비, 전국 5만 1,000여개 아마추어무선국에 대한 정기검사(연 1회) 등이 폐지됨.

○ 이와 같은 준조세 정비 조치로 금년에는 약 1,200억원, 2000년부터는 매년 약 370억원의 국민부담을 경감함으로써

- 기업경영 개선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직접 개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음.

○ 금년중에는

- 각종 경기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체육진흥기금 징수 중단, 무역협회비 및 소방안전협회비의 의무납부제도 폐지(입의 가입 전환) 등 3건의 준조세 정비를 추진하여
- 2000년부터 매년 약 500억원의 국민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계획임.

## 〈참고 1〉 정부출연·위탁기관 준조세 정비 추진현황

○ 2000년까지 16건 폐지·인하

○ 1998년 10건 정비 계획, 추진 완료

- 1998 준조세 징수 : 4,104억원
- 1999 준조세 조정 : 2,899억원(추정)

→ 1999년중 국민부담 약 1,200억원 경감 예상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종류	1998 징수실적 (추정)	인하율 (1999.1 시행)	연간 인하효과 (추정)
도로교통안전협회	협회기금분담금	56,431	13	7,336
무역협회	ASEM 회비 <sup>1)</sup>	83,196	폐지	(83,196)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수수료	205,000	10	20,500
소방검정공사	소방검정수수료	5,204	10	520
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수수료	18,554	10	1,855
석유품질검사소	검사수수료	8,379	10	838
승강기안전관리원	검사수수료	13,880	10	1,388
무선국관리사업단	검사수수료	15,820	아마추어 무선국 등 검사면제 <sup>2)</sup>	3,417
식품위생연구원	검사수수료	2,716	10	272
해외건설협회	회비	1,174	의무가입 폐지	1,174
계	10개	410,354		37,300 (120,496)

주 : 1) 부과액 기준, 2000년 이후 인하효과에서는 제외  
2) 21.6% 인하효과 추정

협회기금"을 조성·운용

○ 분담금 징수(납부)시기

-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면허 신규취득시 및 면허갱신시

\* 면허갱신 : 7년(도로교통법 제74조)

-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자동차신규등록 및 정기검사시

\* 자동차정기검사: 3년 → 4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1998년 7월 시행)

<분담금 징수대상 및 징수실적(1998) : 총 564억원>

- 면허소지자(310만명)

• 금액 : 160억원

• 징수시기 : 신규취득 및 면허갱신시

• 징수기준 : 매월 80원

- 자동차 소유자(590만명)

• 금액 : 385억원

• 징수시기 : 신규등록 및 정기검사시

• 징수기준 : 매월 400원

- 보험사업자 등(21개사)

• 금액 : 19억원

• 징수시기 : 매년

• 징수기준 : 보험사 책임보험수입의 1,000분의 0.42

\* ( ) 안은 1997년 기준

나. 분담금 인하 조치

○ 분담금 인하목적 : 경영혁신에 의해 절감되는 비용을 분담금 인하를 통해 국민에게 환원

## 1.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분담금(도로교통안전협회)

### 가. 분담금 징수목적 및 방법

○ 도로교통안전협회는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안전업무지원 등을 위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등에 대해 일정한 분담금을 징수(도로교통법 제92조, 영 제61조)

- 징수대상자: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사업자, 한국도로공사, 자동차타이어 제조업자

-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동 분담금을 재원으로 "도로교통안전

○ 시행시기 : 1999년 1월 1일(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1998년 12월 31일)

○ 인하율 : 평균 13%

- 면허소지자에 대한 분담금 : 월 80원 → 월 50원(-30원, -37.5%)

\* 7년분 기준 : 6,700원 → 4,200원(-2,520원)

〈사례〉

○ 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유한 사람이 면허갱신일이 되어 면허를 갱신하고자 할 때 지불하는 금액은 갱신수수료+분담금으로 구성

○ 1999년 1월 1일부터, 이 금액 중 갱신수수료는 종전과 같으나 분담금은 월 80원 → 월 50원(-30원)으로 인하되는 바, 면허갱신 연한인 7년(84개월)분을 일괄하여 납부(징수)하므로 6,720원 → 4,200원으로 인하됨.

○ 따라서, 면허갱신수수료가 3,500원이므로, 면허갱신시 지급비용은 총 10,220원 → 7,700원(-2,520원)으로 인하됨.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원, %)

	종전(A)	1999년(B)	B/A
갱신수수료	3,500	3,500	-
협회기금 분담금	6,720 <sup>1)</sup>	4,200 <sup>2)</sup>	-37.5
면허갱신시 소요금액	10,220	7,700	-24.7

주 : 1) 분담금 월 80원×7년(84개월)=6,720원

2) 분담금 월 50원×7년(84개월)=4,200원

## 2. ASEM 회비(무역협회)

### 가. 징수 목적 및 금액

○ 무역협회는 ASEM 회의장 건설비(3,000억원)에 충당하기 위해 내수용 수입신고금액의 0.14%를 특별회비로 징수

\* ASEM 회의(아시아·유럽 정상회의)

- 2000년 9월초 개최

- 참석 예상인원 : 5,000명(30개국 대표단 2,000명, 프레스 3,000명)

### 나. 회비 부과·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계	1997	1998
부과	176,158	92,962	83,196
징수	118,149	59,873	58,276

\*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율 저조(67%)

→ 미납부 업체 중 납부 곤란업체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납부 면제

### 다. 회비부과 중단 : 1999년 1월 1일 시행

〈사례〉 연간 내수용 수입액이 100억원인 수입업체의 경우 1,400만원의 ASEM 회비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경영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

## 3. 지적측량수수료(대한지적공사)

### 가. 지적측량제도

○ 대한지적공사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적측량 업무를 위탁

받아 대행하고, 지적측량 신청자로부터 측량종목별로 수료를 징수(지적법 제28조, 제43조)

- 종목별 측량수수료 단가는 매년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
- 신규등록 측량 1필지당 평균단가 : 130,867원
- 분할 측량 1필지당 평균단가 : 128,892원
- \* 측량수수료 수입액(1998년 추정) : 2,050억원

**나. 지적측량수수료 10% 인하(1999년 1월 15일 시행)**

〈사례〉

- 1,000평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이 땅을 각각 500평씩 2필지로 나누어 팔려고 할 경우 분할측량을 하는데 드는 금액은 종전 257,784원 → 232,006원으로서 25,778원 감소함.
- \* 분할시 1필지당 평균단가가 128,892원 → 116,003원으로 10% 인하되었으므로 2필지로 분할할 경우 257,784원 → 232,006원으로 인하됨.
- 단가 : (종전) 128,892×2필지 → (변경) 116,003원×2필지
- 금액 : (종전) 257,784원 → (변경) 232,006원(인하금액 : -25,778원)

**4. 소방기기검정수수료(소방검정공사)**

**가. 소방기기검정(한국소방검정공사, 소방법 제103조)**

- 소방설비에 사용되는 38개 주요 소방용 기기·기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검정 없이는 판매·설치 및 사용 불가)

○ 카페트 등 실내 인화성 자재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 위험물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 위험물 제조소 완공검사 등
- 검정·검사 등 의무자로부터 수수료 징수(전체 수입의 84%)

**나. 검정수수료 인하(1999년 1월중 시행 예정)**

- 위험물탱크 비파괴 시험점검수수료 31.9% 인하로 전체 검정수수료 평균 10% 인하 효과
- 1998년 예산기준 : 83억 4,300만원 → 74억 7천만원 (-8억 7,300만원)
- \* 1999년 1월중 소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예정(1998년 12월 29일 소방법 개정안 국회 의결)

〈사례〉

- 위험물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정유회사, 저유소, 공장 등의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위험물탱크 시험·점검수수료(비파괴검사)가 평균 31.9% 인하되어 전체수수료 10.4% 인하 효과
- 방사선 투과시험 : 108,358원 → 54,778원으로 인하 등
- \* 소방기계·기구(38종)에 대한 검정수수료는 현행 유지(예) 소화기 검정수수료 275원

**5. 전기설비검사수수료(전기안전공사)**

**가. 전기설비검사제도(전기안전공사, 전기사업법 제52조)**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 등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 검사수수료 단가는 산업자원부 장관 승인을 얻어 시행
- \*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검사수수료 수입액(1998년) : 186억원

#### 나. 수수료 인하(1999년 1월 1일 시행)

- 수수료 단가를 평균 10% 인하
- (예) 자가용전기설비(300KW) : 373,800원 → 336,400원  
(-37,400원) 자가용전기설비(1,000KW) : 614,000원 → 552,600원(-61,400원)

〈사례〉

- 5층 건물 공장(전기설비 용량 300KW 정도)을 새로 건축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수수료 : 373,800원 → 336,400원 = (-37,400원)으로 10% 인하
- 상기 사업자가 2~3년 후 정기 전기설비 검사시 부담해야 할 검사수수료 : 354,800원 → 320,100원(-34,700원)으로 10% 인하

### 6. 석유품질검사수수료(석유품질검사소)

#### 가. 석유품질검사제도(석유품질검사소, 석유사업법 제25조)

- 석유제품의 적절한 품질유지 및 유사 석유제품 제조를 금지하기 위하여, 석유품질검사소는 제조·수입·저장 또는 보관중인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 석유제품 :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등

- 석유품질검사소는 산업자원부 장관 승인을 얻어 수수료 산정·시행
- \* 검사수수료 수입액(1998년) : 84억원

#### 나. 수수료 인하(1999년 1월 1일 시행)

- 검사수수료 단가를 평균 10% 인하
- (예) 연료유(1,000리터당) : 135원 → 122원(-13원)  
윤활유(1,000리터당) : 3,700원 → 3,330원(-370원)

〈사례〉

- 석유판매업자가 지급하는 품질검사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유류 1,000리터(1킬로미터)당 135원 → 122원(-13원)으로 10% 인하
- 1999년 국내 정유회사의 유류 매출량이 1998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부담할 수수료는 84억원(1998) → 75억 6천만원(1999)으로 8억 4천만원 경감

### 7. 승강기검사수수료(승강기안전관리원)

#### 가. 승강기안전검사제도(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승강기안전관리원 등은 승강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강기 설치 완성검사, 승강기 사고 발생시 검사 등 승강기 안전검사 수행
- 이와 같은 검사시 수수료 징수(산업자원부 장관 승인)
- 검사수수료 수입(1998년) : 139억원

**나. 검사종류 및 검사기관 : 사실상 한국승강기안전  
관리원이 독점적으로 수행**

〈검사종류(수수료 수입비율) 및 검사기관(유효기간)\*〉

- 완성검사(37%) : 건축물에 승강기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법 제13조)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생산기술연구원(1998년 12월 말까지), 한국기계연구원(1998년 12월 말까지)
- 정기검사(59%) : 매 1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법 제13조)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안전센터
- 수시검사(3%) :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사용중인 승강기의 속도·용량을 변경한 경우(법 제13조)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생산기술연구원(1998년 12월 말까지), 한국기계연구원(1998년 12월 말까지)  
\* 경영혁신방안(경쟁촉진)에 따라 1999년 1월부터 유효기간 폐지

**다. 검사수수료 인하(1999년 1월중 시행 예정)**

- 승강기제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998년 12월 입법예고)
- 평균 10% 인하 : 연간 국민부담 13억 8,800만원 경감 효과
- 〈사례〉 엘리베이터 5층(8인승) 정기검사수수료 : 220,000  
→ 190,000원(-22,000원)

**8. 무선국검사수수료(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가. 무선국검사제도**

- 무선전신·무선전화 등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비의 적합성과 무선종사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 무선국관리사업단의 검사를 받음(전파법 제9조 이하).
- 검사종류 : 준공검사, 변경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
- 검사수수료 : 송신기 규모 및 검사종류에 따라 1만원~22만 2천원
- 1998 검사실적 : 160,897건, 수수료 158억 2천만원  
\* 무선국관리사업단 : 1990년 8월 1일 설립(전파법 제71조의 2)

**나. 검사수수료 부담 경감(1999년 1월중 시행 예정)**

- 규제완화와 이용자 편익을 위하여 검사 면제대상 확대 및 정기검사주기 연장(전파법 개정 1998년 12월 24일 국회 의결)
- 준공 및 정기검사 면제 : 휴대용무선국, 아마추어무선국, 간이무선국 등  
\* 1998 현재 아마추어 무선국 : 5만 1,425개국
- 무선국 정기검사 주기 완화  
• 1년 → 3년 : 방송국(연주시설이 있는 것)  
• 3년 → 5년 : 이동중계국, 육상국, 이동국
- 수수료 경감효과 : 연간 34억 2,100만원 절감(1998년 대비 21.6%)

〈사례〉 500W 이상 5KW 미만인 아마추어 무선국의 경우 신  
규설치시 준공검사수수료 3만원, 정기검사수수료 1만  
9천원 면제

### 9. 식품검사수수료(식품위생연구원)

#### 가. 식품검사제도

##### ○ 검사종류

- 제품검사 : 인삼, 건강보조식품, 식품첨가물
- 민원의뢰검사 : 일반식품, 먹는물 등
- \* 식품위생법 제13조 이하

##### ○ 수수료 : 판매예정가격 총액의 1,000분의 3

- 검사종류에 관계없이 일률 적용
- \* 식품위생법 제73조

#### 나. 연도별 식품검사수수료 징수액

(단위 : 백만원)

	1995	1996	1997	1998
징수액	3,470	4,141	3,860	2,716

#### 다. 식품검사수수료 인하(1999년 1월 1일 시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1998년 10월 9일)
- 수수료 고시 개정(1998년 11월 27일)
- 인하율 : 10%(판매예정가격의 1,000분의 3 → 1,000분의 2.7)

○ 국민부담 경감액 : 1998 실적 기준 연간 2억 7,100만원

〈사례〉 판매가 10만원의 건강보조식품 5천개를 검사하  
는 경우 수수료: 1,500,000원 → 1,350,000원  
(- 150,000원)

### 10. 해외건설협회 회비(해외건설협회)

#### 가. 해외건설협회 현황

○ 설립근거 :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1976년)

○ 기능 : 해외건설정보의 수집·분석·보급, 해외공사관련  
용자·차관·보증 알선 및 기타 위탁업무

#### 나. 회원 및 회비 현황

○ 총 451개 등록업체 중 협회가입자수 327개사(1998년 12  
월 31일 현재)

○ 통상회비가 해외공사 기성고의 2.6/10,000이며 기타 소액  
의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대형 7개 업체의 회비부담률  
83.7%)

#### 다. 협회가입제도의 문제점

-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 제4항에 의해 가입 의무화
- 1980년 전후 상황과는 달리 중동·동남아 등 해외건설 물  
량의 급격한 축소

○ 세계화·개방화시대에 해외진출건설업체를 위한 협회 기능의 한계

**라. 협회의 임의 가입화로 인한 회비 납부의무 면제**

○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국회 의결(1999년 1월 6일)

○ 회비 징수규모 : 1998년 11억 7,400만원

〈사례〉 해외에서 연간 1,000억원의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업체의 경우 : 통상회비 2,600만원 경감

**〈참고 2〉 1999년도 정부출연·위탁기관 준조세 정비 계획**

**◇ 정비대상**

- 체육진흥기금 : 운동경기장, 수영장, 스키장 입장료의 5% 등
- 무역협회비 : 가입비 20만원, 연회비 10만원(가입업체 약 6만)
- 소방안전협회비 : 소방용구 제조업자,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자, 방화관리자, 소방설비기사 등 월 2~4천원
- \* 문예진흥기금·국제교류기여금 한도 설정, 상공회의소 회비 의무납부제도 폐지 등은 2000년중 추진

**◇ 정비계획 및 효과**

(단위 : 백만원)

기관명	1998 징수실적 (추정)	정비계획 (시행시기)	국민부담 경감 (연간, 추정)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진흥기금)	39,500	징수중단(2000.1)	39,500
무역협회(회비)	4,420	강제징수 폐지 (임의가입 전환, 2000.1)	4,420 <sup>1)</sup>
소방안전협회(회비)	7,289	강제징수 폐지 (임의가입 전환, 2000.1)	7,289 <sup>1)</sup>
계	51,209		51,209

주 : 1) 임의가입시 자진납부 회비는 제외

**1. 체육진흥기금(체육진흥공단)**

**가. 개요**

- 설치근거 : 국민체육진흥법(1972년 설치, 기타 기금)
- 설치목적 : 체육진흥사업 재원 확보, 체육시설·사업비 지원
- 기금조성 수입(1998년) : 563억원(입장료 등 부가금 징수 395억원, 광고 수입 121억원, 복권 수입 47억원)
- 기금사용(1989~1998) : 4,275억원(국민체육 3,198억원 청소년 육성 893억원, 올림픽기념 274억원)
- 기금 적립액(1989~1997) : 6,163억원(올림픽 잉여 3,100억원 포함)

## 나. 기금징수요율(1998)

- 경기장 : 운동장, 체육관 등 입장료의 5% 징수
- 수영장 : 입장(시설이용)료 또는 회비의 5% 징수
  - \* 개인소유 실외수영장 제외
- 골프장
  - 1인 1라운딩 이용료 수준별 차등 정액 징수 : 500~2,500 원
  - 골프대회 입장료 : 입장료의 5% 징수
- 스키장 : 입장료 및 리프트 등 시설 이용료의 5% 징수
- 경마장 : 입장료의 10% 징수
- 볼링장
  - 1회 이용자 : 1인당 200원 정액 징수
  - 회원제 : 회비(쿠폰 이용자 포함)의 5% 징수
- 골프연습장
  - 1회 이용자 : 1인당 300원 정액 징수
  - 회비의 5% 징수
  - \* 실내 골프연습장 제외
- 경륜장 : 입장료의 10% 징수
- 종합체육시설 : 입장(시설이용)료 또는 회비의 5% 징수  
(사례) 운동경기장 입장료 5,000원인 경우 250원 징수

## 2. 무역협회비(무역협회)

### 가. 현행제도

- 무역업자가 무역업을 신고할 때 무역협회 회원가입신청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가입 강제(대외무역관리규정 제2-1-1조)
- 회원 사업자수 : 6만 124개 업체
- 회비 : 가입비 20만원, 연회비 10만원
  - \* 1998년 회비 수입 예산 : 44억 2천만원(6만 124개 업체)

### 나. 문제점

- 법적 근거없이 무역업자에 대한 부당한 부담
- \* 무역업은 단순 신고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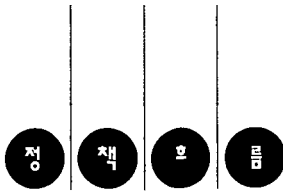
### 다. 강제징수 중단(강제가입 → 임의가입 전환)

- 2000년 1월부터 무역협회 의무가입제도 폐지

## 3. 소방안전협회비(소방안전협회)

### 가. 의무가입 및 회비징수 현황

- 소방안전협회 의무가입(소방법 제99조)
  - 소방용 기계·기구제조업 허가자, 소방설비공사업 등의 면허자
  -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설비기사 등으로 채용된 자



\* 월 2,000~4,000원의 회비 부과(1997년 약 70억원 징수)

- 박물관, 미술관 등 : 입장료의 5~10%

**나. 의무가입 폐지**

-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임의사업자 단체로 전환
- 소방법상의 설립근거 및 강제가입 조항 삭제
- \* 1997년 9월,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 1998년중 법령 개정, 2000년 1월부터 시행
- 소방법 개정 국회 의결(1998년 12월 29일)

**<참고 3> 2000년 추진(3건)**

**나.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억원, %)

계	국고	공익자금	모금수입	올림픽잉여금
2,849(100)	1,247(44)	650(23)	852(30)	100(3)

주 : ( )안은 비율임.

**1998년 모금 실적**

(단위 : 백만원, %)

	합계	영화관	공연장	문화재	박물관	미술관
금액	21,441	15,961	3,136	1,482	502	358
	(100)	(74.4)	(14.6)	(6.9)	(2.3)	(1.7)
시설수	1,092	570	370	75	54	23

주 : 1. ( )안은 비율임.

2. 예를 들어 영화관람료 6,000원인 경우 390~450원 징수

**1.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진흥원)**

**가. 기금 개요**

- 설치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1973년 설치)
- 설치 목적 :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민족고유문화 발전·지원
- 기금조성 방법 : 정부의 출연금이나 공연장, 박물관 등 입장료의 부가금
- \* 문예기금 모금기준(입장료 기준)
- 영화관, 공연장
- 입장료 3,000원 미만(입장료의 2~5%)
- 입장료 3000원 이상(입장료의 6.5~7.5%)

**다. 정비방안**

- 모금한도 설정 : 4,500억원

**2. 국제교류기금(국제교류재단)**

**가. 기금 설치목적(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도모 및 국제우호친선 증진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
- 기금은 정부출연금과 국제교류기여금의 징수액으로 조성

### 연도별 국제교류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

	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교류기여금잉여액	768	110	73	60	85	135	306
(기여금 징수액)	(1,232)	(156)	(166)	(206)	(219)	(255)	(230)
정부출연금	350	-	-	100	100	100	50
계	1,118	110	73	160	185	235	356

주 : ( ) 안은 비율임.

#### 나. 국제교류기여금 모금대상 및 금액(시행령 제5조 제1항)

- 여권의 발급신청자
  - 일반여권
    - 복수 : 국내 15,000원(거주목적 7,500원), 국외 20달러(거주목적 10달러)
    - 단수 : 국내 5,000원, 국외 7달러
  - 여행증명서 : 국내 2,000원, 국외 3달러
- 기재사항 변경 신청자 : 국내 1,500원, 국외 2달러
- 전신수수료 납부자 : 국내 2,000원(회신시 4,000원), 국외 3달러(회신시 6달러)
- 사실증명, 영사관계문서 : 국내 600원, 국외 1달러

#### 다. 정비방안

- 모금 한도 설정 : 2,000억원

### 3. 상공회의소 가입제도

#### 가. 현행 제도

- 영업소, 공장, 사업장을 두고 상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및 내국법인은 의무적으로 상공회의소 회원이 됨(상공회의소법 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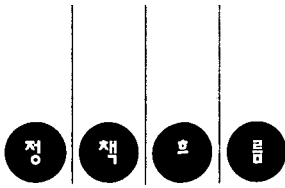
- 상공회의소 수 : 62개(지방 포함), 회원 사업자수 : 8만 2,545개 업체

#### 나. 회비 납부의무

- 회원은 매출세액(추산액)의 0.8% 이내에서 회비 납부의무 부담
- 상공회의소는 서울특별시·시·읍·면장에게 위탁징수
- 1997년 징수실적 : 686억원

#### 다. 정비방안

- 의무가입제도 폐지(2003년 1월 1일)



# Mutual Fund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 이 자료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에서 1999년 1월 15일에 발표한  
「Mutual Fund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의 전문입니다.

## I. 주요 내용

- 정부는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Mutual Fund(증권투자회사)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현재 Mutual Fund가 상장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투자수익을 개인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그 개인 투자자는 “주주”이므로 다른 일반법인의 주주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이 전액 과세되고 있으나
  - Mutual Fund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투자신탁회사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자의 “상장 유가증권 매매차익”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자간에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Mutual Fund를 통한 간접투자를 촉진하고 금융상품간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Mutual Fund와 투자신탁회사의 개인투자자가 과세상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세제를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음.
-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금년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

여 Mutual Fund 개인투자자의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하여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고  
- 3년후 과세전환 문제는 각종 금융자산에 대한 수평적·수직적 공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검토할 계획임.

## II. 수익증권과 Mutual Fund 투자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부담 비교

○ 투신사의 수익증권과 Mutual Fund의 수익은 대별하여

- (1)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받은 이자
- (2) 주식에 투자하여 받은 배당
- (3) 유가증권의 매매로 얻은 양도차익으로 구성됨.

○ 세부담 비교 예시

(수익증권과 Mutual Fund의 수익규모와 수익내용이 동일한 경우)

- ①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받은 이자 : 20
- ② 주식에 투자하여 받은 배당 : 20
- ③ 상장주식의 매매로 얻은 양도차익 : 60

## 가. 현행

- 투신사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상장주식 매매로 얻은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채권이나 주식으로부터 받은 이자와 배당(①+②)에 대하여만 소득세 과세
- 위 사례의 경우 세금부담은  $40 \times 22\%$ (주민세 포함)=8.8

- Mutual Fund에 투자한 경우

- ①, ②, ③ 모두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 위 사례의 경우 세금부담은  $100 \times 22\%$ (주민세 포함)=22

## 나. 개정시

- Mutual Fund에 투자한 경우도 ①+②에 대하여만 소득세 과세

- 위 사례의 경우 세금부담은  $40 \times 22\%$ (주민세 포함)=8.8

## <참고>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개요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란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주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회사를 말함.

- 증권투자회사는 명목상으로는 존재(paper company)하며, 운용·모집·자산보관 등 모든 업무는 자산운용회사 등 각 별도의 회사를 통하여 처리함.

(증권투자신탁과 증권투자회사 비교)

- 증권투자신탁

- 설립형태 : 개별 신탁계약
- 발행 유가증권 : 수익증권

• 투자자의 지위 : 수익자

- 수익 형태 : 분배금(이자 또는 배당)
- 상품의 성격 : 저축수단(만기 존재)
- 통제제도 : 감독기관의 감독

- 증권투자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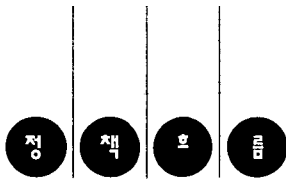
- 설립형태 : 펀드 하나하나가 별도의 주식회사
- 발행 : 유가증권주식
- 투자자의 지위 : 주주
- 수익 형태 : 배당금
- 상품의 성격 : 투자수단(계속기업)
- 통제제도 : 주주에 의한 규제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제외(조특법 제53조)되어

-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가 대부분 면제 됨.

-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시장 등록주식을 양도시 증권거래세와 농특세가 면제됨(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0호 등).



# 근거과세기반 구축을 위한 기장신고자 확대사업 추진

※ 이 자료는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1999년 2월 4일에 발표한 「근거과세기반 구축을 위한 기장신고자 확대사업 추진」의 전문입니다.

## I. 기장자확대사업 추진배경

- 소득세 신고납세제도 시행 3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대부분의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등 종전 부과 결정제도하의 추계과세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
- 확정신고 사업자 중 68.2%, 전체 개인사업자 중 88.2%가 추계 신고를 하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장부에 의한 근거과세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다수 사업자가 추계과세에 의존하고 있음.
- 일종의 인정과세인 추계과세는 실제소득과 과세소득의 괴리로 과세의 공정성을 기할 수가 없고 막대한 행정력 소요 및 조세마찰 소지가 있음.
- 대다수의 개인사업자가 세법상의 기장의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는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기할 수가 없고, 신고납세제도의 근간인 납세자의 자율신고에 의한 선진세정을 구현할 수 없음.
- 사업내용과 실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납세자가 스스로 기장하고 그것을 기초로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것이 정착화 될 때에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달성

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국세행정 개혁차원에서 이번에 기장신고자 확대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 II. 기장신고자 확대 목표

- 2003년까지 근거과세기반을 완전구축함.

(단위 : 천명, %)

	1997 귀속 (실적)	1998 귀속 (예상)	1999 귀속 (목표)	목표			
				2000	2001	2002	2003
확정신고 인원	1,275	1,325	1,377	1,431	1,488	1,546	1,608
기장신고자	406	430	600	720	790	850	960
기장신고비율	31.8	32.4	43.5	50.0	53.0	55.0	60.0

- 금년말까지 기장사업자를 60만명선까지 확대하고 내년(2000년)까지 기장신고 비율을 50% 수준으로 향상시킬 목표임.
- 중·소 사업자(연간 매출액 4천 8백만원 이상 자)의 63%를 간편장부 또는 복식기장자로 육성함.
- 5년 후인 2003년까지는 소득세 기장신고자를 약 100만명선까지 확대할 계획임.
- 이때쯤이면 기장사업자 수가 1997 귀속대비 236.4% 증가하는 것이며, 중·소 사업자의 80%가 기장을 하게 되어 사

- 실상 근거과세 기반이 구축될 것임.
- 2003년까지 기장신고 풍도 완전 정착

### III. 기장자 확대사업 추진방향

- 장기계획(5개년 목표)에 의거 지속적 추진
  -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가 일반화, 관례화될 때까지 지속적, 적극적으로 추진함.
- 납세자의 실정을 배려한 실효성 있는 기장지도
  - 일방적 기장지도를 지양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추진
  - 납세자의 비정규 장부·증빙을 자연스럽게 정규장부로 유도
  - 최초 기장자에 대해서는 기장상 오류, 미비점이 있더라도 가급적 기장내용을 존중하고 세무간섭을 배제함.
- 기장자에 유리한 여건 조성
  -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10%의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줌(연간 100만원까지).
  - 기장개시 후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함.
  - 저렴한 비용으로(월 5만원 내외)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의뢰 가능함.
- 무기장자에 대한 관리 강화
  - 무기장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10%를 추가로 부과함.
  - 추계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함.
  - 현행의 추계과세제도를 개선하고 추계신고 여지를 축소함.

### IV. 간편장부를 대대적으로 보급함.

- 금년부터 쉽고 편리한 '간편장부' 제도를 새로 시행함.

- 간편장부는 단일장부로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손쉽게 기장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장부이며
- 복식기장이 어려운 중·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널리 보급하여
- 부담없이 기장하게 함으로써 기장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함.

- 간편장부를 사용할 사업자는 아래와 같음.
  - 도매업·소매업, 광업, 임업, 어업, 축산업, 부동산매매업, 산림소득 : 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창고업, 금융보험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직전년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직전년도 수입금액 7천 5백만원 미만

- 간편장부 기장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됨.
  -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 신청하면 무료로 기장실무지도(세무협력단체에서)
  - 세무신고 편의제공 등 한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
  -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 기장자로서 1999년도 수입금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 앞으로 3년간 세금 경감혜택이 있음.

- 반면에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10% 또는 20%)가 추가로 부과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세무관리를 받게 됨.

### V. 전산기장 S/W를 개발 보급함.

- 간편장부용 전산기장 프로그램으로 개발·보급함.
  - 간편장부 기장자의 회계처리 전산프로그램을 금년 상반기중 개발하고 세트당 5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의 개인사업자에게 보급하여

- 전산기장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 기장풍토를 조성하고 무기장 추계신고자를 대폭 축소해나갈 계획임.
- 요즈음은 집집마다 PC가 있고 웬만한 사람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스스로 하거나 자녀를 시켜서 전산기장이 가능함.
- 전산기장을 하는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기장대행 수수료 부담없이 완전한 기장이 가능함.
- 전산기장에 의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편리하게 자신의 사업실적을 기초로 신고할 수 있음.

## VI. 세무협력단체와 공동사업으로 추진

- 민간단체의 선도적 역할 유도
  - 납세자의 기장에 대한 실질적 호응유발을 위해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사회 등 민간단체에서 기장지도 및 홍보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 과세관청은 여건조성에 주력하며 전략적·탄력적으로 대처하여 기장자 확대사업을 추진함.
-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와 공동사업 추진
  - 두 단체는 세무대리단체로서 금년도의 주요 사업으로 기장자 확대사업에 동참함.
  - 소속회원을 총 동원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체제를 갖추어 세무당국과 여러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 지역별로 기장대상 사업자에 대한 홍보·지도계몽·안내·상담 등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

- 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협력체계 구축
  -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무기장 회원 중심의 지역별 간담회 개최, 무료 기장지도·상담·안내, 세법 및 부기교육을 실시하며
  - 지역별 기장상담·안내코너를 설치 운영함.
- 성실신고회원조합, 사업자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사업자의 자발적 단체인 동업자조합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기장 회원에 대한 기장권장·상담·안내 등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전개함.
  - 세무당국 및 세무대리단체와 유기적 협조하여 기장확대사업에 적극 참여
- 지역별 무료기장지도 상담실 설치 : 산하관서 및 세무협력단체의 지역별 조직에 무료 기장상담요원 상주
  - 각 지방청 및 세무서에 기장상담요원 배치
    - 민원봉사실, 소득세과 및 VAT과에 기장안내·상담코너 설치
    - 6·7급 직원 중에서 회계지식이 충분하고 친절·성실한 직격자를 선발하여 배치
  - 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에서 기장지도·상담
    - 세무사회(본회) 및 7개 지방세무사회에서 무료 기장지도 및 상담실시
    - 공인회계사회에서도 위와 같이 기장지도·상담 실시
  - 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기장지도·상담
    - 상공회의소 합동세무정보센터(서울 남대문로4가 45) 및 62개 지방 상공회의소에서 회원에 대한 기장상담, 안내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12개 지회에서 회원사에 대한 기장상담·안내
  - 성실신고회원조합 및 동업자조합에서 기장상담·안내
    - 전국 50개 성실신고회원조합 및 178개 동업자조합 등에서 회원에 대해 무료 기장상담·안내 실시

# 1998년 5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상황

※ 이 자료는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1999년 1월 20일에 발표한 「1998년 5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상황」의 전문입니다.

## I.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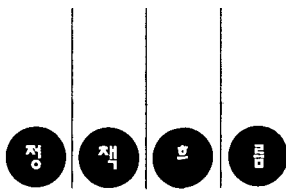
- 이 자료는 「TMF 환란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상황에 대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 중 1997년중 귀속 신고상황을 정리한 것임.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상황(1997년 귀속)
  - 1998년 5월에 신고한 1997년 귀속 금융소득 신고자의 계급별 신고상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명, 억원)

금융소득 구간	신고인원	신고 금융소득
총 계	44,276	3조 7,752
4천만원 이하	9,340	811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24,131	13,019
8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5,087	4,893
1억 2천만원 초과	5,718	19,029

- 4천만원 이하 :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및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당연종합과세되는 자의 신고원인과 금융소득

- 신고금융소득은 신고대상자의 모든 금융소득(4천만원 이하 금액 포함)임.
- 무신고·과소신고 인원과 금융소득금액은 사후관리가 끝난 후에 파악이 가능하므로 이 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전 경과규정에 의해 1998년에 신고한 금융소득은 199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
- 장기저축자의 경우 1996~1997년간 발생한 소득임.
- 해지시 지급받은 이자소득 중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과세



# IMF가 발표한 “아시아 경제위기 국가에 대한 정책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 - 재정정책 관련부문 -

※ 이 자료는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기획국 재정협력과에서 1999년 1월 25일에 발표한 「IMF가 발표한 “아시아 경제위기 국가에 대한 정책프로그램 평가 보고서”」의 전문입니다.

### <보고서 핵심 요약>

- IMF는 아시아 경제위기 국가에 대해 초기에는
  - 위기국의 완만한 경제성장 둔화와 환율 상승 예측을 전제로
  - ① 경상수지 적자 축소, ② 재정지출의 구축효과 최소화, ③ 인플레이 회피적인 금융구조조정 비용조달을 목표로 하여
  - 세출 삭감, 세입 증대 등 긴축적인 재정정책 프로그램을 제시
- 예측과 달리, 위기국의 급속한 경기 침체와 환율 상승이 나타나
  - 1998년 상반기부터는 재정의 경기부양기능을 강조하면서 한국·태국에 대해 재정적자 허용폭을 확대
  - 1998년도 재정적자/GDP 목표치(한국) : 0.2% (당초) → 5.0%(수정)
- IMF는 그동안 제시해 온 재정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 위기 발생 초기 장래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이에 따른 긴축적 재정정책프로그램을 Overselling한 데 대한 책임은 인정하나
  - 외국자본이 급속히 이탈하는 외환·금융위기 와중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하였더라도 경기효과는 별무하면서 자금

구축효과 등의 부작용만 가중되었을 것이며

- 오히려, 초기 재정긴축이 외환·금융시장의 조기 안정, 재정적자 확대 방지 등에 기여 → 현재의 경기부양적 재정정책 추진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함.
- 경기부양적 재정정책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자를 통한 재정 적자 자원(부분적으로)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

### 1. 서론

- IMF가 한국·태국·인도네시아(인니)의 외환위기 발생 초기에 제시했던 재정정책프로그램은
  - 경상수지 개선,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압박효과(crowding-out effect) 최소화, 금융구조조정 비용을 인플레이션 회피적인 방법으로 조달 등에 목표를 두고
  - 급속한 재정수지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세출 감축과 세입 확대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긴축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음.
  - 한국, 인니에 대한 재정긴축요구 폭은, 당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상황이 나뉘었던 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1998년에 들어서 실제

- 위기국가의 경기침체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한 반면 국제수지의 대폭 개선과 급속한 평가절하가 현실화되면서 재정수지도 당초 목표치보다 큰 폭의 적자를 나타냄.

○ 이에 따라 IMF는 1998년 상반기부터 경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재정정책프로그램을 전환하였음.

- 실제로 한국·인니 정부가 IMF가 제시한 재정적자폭 한도 내에서 충분하고 신속히 조치를 취했는지는 별도로 생각해 볼 문제임.

## 2. 위기 발생 초기 재정정책프로그램의 논거 (Initial Rationale for Fiscal Adjustment)

○ 위기 발생시 한국·태국·인니의 재정상황에는 별 문제가 없었음.

- 이들 나라에서 외환위기 발생은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공공부문의 '과도한 재정적자와 통화증발'이 아닌, 과도한 기업부채, 취약한 금융부분 등 민간부문에서 원인을 제공

- 위기 발생 당시 3개국의 재정상태는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초반, 인니·태국은 1980년대 후반에 추진한 강력한 재정진전화 노력의 결과로 매우 양호하였음.

○ 그러나 외환위기 수습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권고하면서 재정긴축 조치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예외가 될 수는 없었음.

① 정부부문의 저축(재정흑자) 확대 → 대외신인도 제고로 외국자본 이탈 억제, 수입 감소로 경상수지 개선

② 재정적자 억제 → 민간기업에 대한 신용경색요인 경감

③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융구조비용 조달

### (외환시장 안정 : 논거(1))

○ 재정긴축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 긍정적인 효과는 외채 상환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도 제고, 경상수지 개선, 환율인상 압력 완화, 통화증발 가능성 축소 등  
- 그러나 지나친 재정긴축은 과도한 경기 수축 → 대외지불 전망 악화로 역효과 발생

○ 초기 정책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소폭의 경상수지 개선과 따라서 소폭의 재정수지 개선을 기대하는 내용으로 설계

○ 실제로는 전망보다 심각한 생산 감축, 대폭의 환율 상승이 발생  
- 경상수지는 대폭 개선, 재정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시현

### (구축효과 최소화 : 논거(2))

○ 재정적자는 정부의 차입규모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비정부 부문에 대한 가용자금규모에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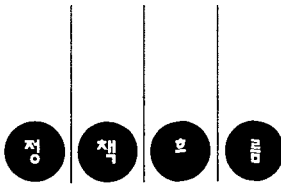
○ 실제로 전망보다 큰 폭의 재정적자 발생은, 외자 유입의 급감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의 자금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재정적자 보전재원은 한국, 태국의 경우는 주로 내자로, 인니는 주로 외자로 충당

재정적자 보전자원 조달

(단위 : %)

	한국(FY 1998)태국	(1997/1998)	인니(1998/1999)
내자	69	89	-
민영화 수입	-	-	16
외자	31	11	84



〈금융조정 비용 조달 : 논거(3)〉

-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출은 발행채권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나타남.
- 당초 소요재원규모는 GDP대비(FY 1998)
  - 한국 0.8%, 태국 1.1%, 인니 0.5% 수준을 예상
- 중기적으로 한국은 2% 이상, 인니는 2% 내외로 증가될 전망임.
- 금융구조조정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은
  - 한국, 인니는 정부재정으로
  - 태국은 대부분 중앙은행 지원, 일부 정부재정 지출로 충당

3. IMF가 제시한 재정정책프로그램(What was done)

〈초기 프로그램〉

- 당초 IMF가 제시한 재정수지 목표는
  - GDP대비 한국 0.2%, 인니 0.5%의 재정흑자를, 태국은 0.1%의 재정적자 수준(FY 1998, 또는 FY 1998/1999 기준)
  - 한국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자동적 재정수지 변동분을 제외한 재량적 재정정책을 통한 재정수지는 GDP대비 0.1% 적자를 유지하여 소폭의 경기부양효과를 갖도록 하였음.
  - 재량적인 지출 삭감과 세입 증대조치에 따른 수지 개선폭(GDP대비 0.7%)이 금융구조조정 비용(GDP대비 0.8%)을 상쇄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 결과적으로, 한국의 0.2% 재정 흑자목표는 지나치게 낙관적 세입을 전제로 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초기 재정정책프로그램 목표(GDP대비)

(단위 : %)

	한국(FY 1998)	태국(FY 1997/1998)	인니(FY 1998/1999)
재정수지	0.2	-0.1	0.5
재정정책변화가 없을 경우 대비	0.8	2.1	1.1
수입	0.8	1.2	0
지출	-0.8	-1.6	-1.6
금융구조조정	0.8	1.1	0.5
기타	-	0.4	-
전년도 대비	0.2	1.0	0.2
경제환경변화	-0.4	-0.9	0.3
재량적정책변화	-0.1	1.9	0.2
금융구조조정	-0.8	-1.1	0.0
기타	0.7	0	-0.2
GDP 성장률	2.5	3.5	3.0

〈수정된 프로그램〉

- 당초 전망과 달리 심각한 경기침체, 환율 급등, 재정적자폭 확대 발생
  - 급속한 경기침체는 세입 감소를 초래 세출은 위기국의 사회 안전망 미비로 사회보장 지출이 크게 늘지 않는 등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음.
  - 환율 급등은 외화표시 부채 상환원리금 증가→법인세수 감소, 정부구매 수입품 가격상승 등을 통해 재정적자 확대
- 이에 따라 IMF는 재정이 경기부양효과를 갖도록 재정정책프로그램을 수정
  - 한국은 재량적 재정적자폭을 GDP대비 2.8%, 태국은 0.6%로 확대, 반면, 인니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적인

재정적자 확대폭이 매우 커서 재량적 재정수지는 흑자가 되도록 제시

### 요인별 재정수지 전망(GDP대비)

(단위 : %)

	한국		태국		인니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재정수지	0.2	-5.0	-0.1	-5.1	0.5	-10.1
변동 요인별						
경제 환경변화	-0.4	-1.9	-0.9	-3.1	0.3	-11.1
• 환율	-0.3	-0.9	-0.9	-2.0	0.2	-6.4
• 경제성장률	-0.1	-1.0	0	-0.9	0.1	-4.0
• 유가	0	0	0	0	0	-0.7
재량적 정책변화	-0.1	-2.8	1.9	-0.6	0.2	1.7
• 지출	0.1	-1.1	1.8	2.6	0.4	3.8
• 사회안전망	-0.2	-2.1	0	-0.6	0	-1.0
• 금융구조조정	-0.8	-1.4	-1.1	-2.0	0	-1.6
• 세제개편	0.8	1.8	1.2	-0.7	-0.2	0.5
기타	0.7	-0.4	0	0.1	-0.2	0.2
GDP 성장률						
명목	6.6	0.1	11.3	5.3	19.8	43.4
실질	2.5	-7.0	3.5	-5.0	3.0	-12.1

주 : 한국은 FY 1998, 태국은 FY 1997/1998, 인니는 FY 1998/1999 기준

#### 4. 평가(Assessment)

- IMF의 초기 재정정책프로그램은 완만한 경기둔화와 환율 상승 전망을 전제로 재정적자 확대 예방에 초점을 둔 반면
- 이후 급속한 경기침체가 현실로 나타나자 정례적인 위기국가와의 정책 검토과정을 통해
  - 한국, 태국은 확장적인 재정정책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 인니는 경기변동에 따른 자동적인 재정적자폭이 크게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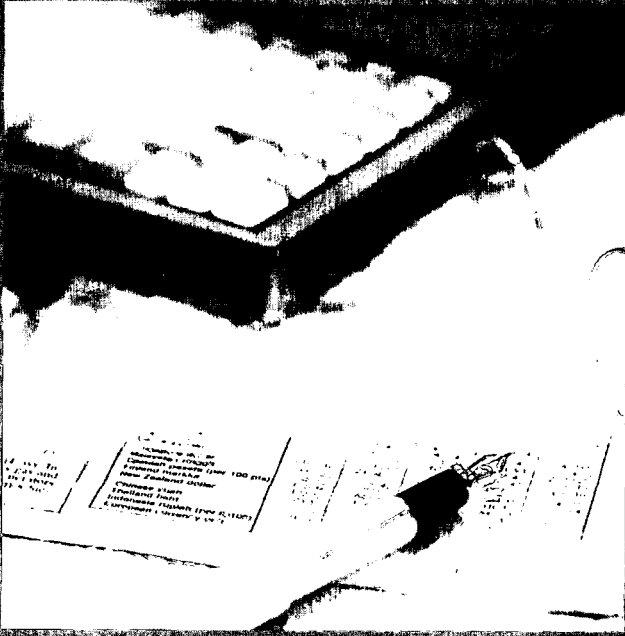
- 이렇게 IMF가 탄력적인 정책대응을 취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 IMF가 지나치게 긴축적인 재정정책프로그램을 강요하였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실제 상황과 거리가 있는 이야기임.

- 그러나 IMF가 위기발생 초기에 장래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이를 전제로 한 긴축적 재정정책 프로그램을 Overselling한 데 대한 책임은 부분적으로 인정하여야 함.

- 초기부터 급속한 경기침체 가능성을 감안하여 경기부양적인 재정정책을 권고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 외국자본이 급속히 이탈하는 외환·금융위기 와중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하였다라도 경기효과는 별무하면서 자금 구축효과 등의 부작용만 가중되었을 것임.

- 오히려, 초기의 재정 긴축이 외환·금융시장의 조기 안정, 재정적자 확대 방지 등에 기여함으로써
- 현재 한국, 태국정부가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구사할 수 있게 한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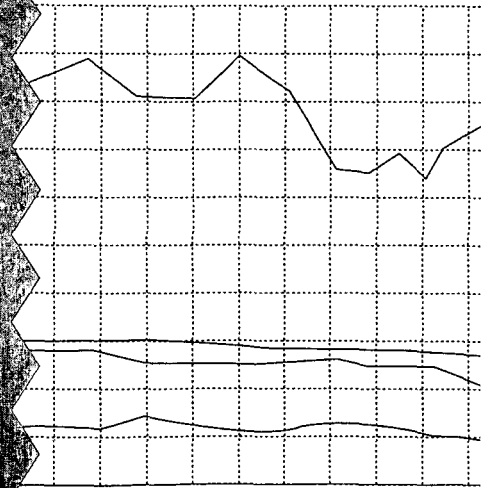
- \* 경기부양적 재정정책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원활한 외자 유입이 가능한 경우에만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재정통계

##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치

1.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치(순계기준)
2.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치(총계기준)





### 1.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 (순계기준)

(단위 : 10억원)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 세입	487.6	565.7	654.0	757.7	1,117.7	1,692.5	2,511.4	3,184.9	4,385.2
가. 중앙정부	416.9	491.8	540.8	635.9	967.8	1,425.8	2,144.9	2,746.9	3,827.7
재정투융자S/A전대차관이자									
재정투융자S/A예탁금이자									
나. 비금융공기업	70.7	73.9	113.2	121.8	149.9	266.7	366.5	438.0	557.5
전입금									
(철도, 통신, 양곡)									
2. 세출 및 순융자	515.4	642.1	846.5	844.7	1,418.6	2,158.6	2,909.7	3,660.5	5,001.0
가. 중앙정부	468.2	568.2	779.6	717.0	1,186.8	1,733.8	2,487.4	3,245.8	4,375.5
1) 세출	441.8	541.5	751.0	705.7	1,059.5	1,556.3	2,297.8	2,782.6	3,760.3
재정투융자S/A차입금이자									
전출금									
2) 순융자	26.4	26.7	28.6	11.3	127.3	177.5	207.6	463.2	615.2
세입세출외전대차관									
전대차관융자회수									
나. 비금융공기업	47.2	73.9	66.9	127.7	231.8	424.8	422.3	414.7	625.5
전대차관이자									
(철도, 통신, 양곡)									
3. 수지차	-27.8	-76.4	-192.5	-87.0	-300.9	-466.1	-398.3	-475.6	-615.8
4. 보전재원	27.8	76.4	192.5	87.0	300.9	466.1	398.3	475.6	615.8
가. 중앙정부	21.7	9.9	159.6	23.3	150.4	187.2	191.2	312.3	296.4
국내	7.5	3.1	103.2	-41	55.5	31.6	-23.3	34.4	-68.6
해외	14.2	6.8	56.4	64.3	94.9	155.6	214.5	277.9	365.0
중앙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내부거래									
나. 비금융공기업	6.1	66.5	32.9	63.7	150.5	278.9	207.1	163.3	319.4
국내	-6.3	2.1	39.3	68.1	166.4	291.3	196.1	161.9	325.2
해외	12.4	64.4	-6.4	-4.4	-15.9	-12.4	11.0	1.4	-5.8
중앙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내부거래									



## 1.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 (순계기준)

(단위 : 10억원)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 세입	5,769.8	7,280.8	9,246.7	10,074.3	11,595.5	13,039.6	14,504.8	15,855.6	18,881.7
가. 중앙정부	5,058.3	6,277.8	7,854.0	9,090.3	10,564.3	11,607.0	12,938.1	14,687.4	18,327.2
재정투융자S/A전대차관이자									
재정투융자S/A예탁금이자									
나. 비금융공기업	711.5	1,003.0	1,392.7	984.0	1,031.2	1,432.6	1,566.7	1,168.2	554.5
전입금									
(철도, 통신, 양곡)									
2. 세출 및 순융자	6,210.1	8,454.5	11,357.6	12,296.4	12,546.1	13,962.5	15,218.1	15,920.5	18,622.0
가. 중앙정부	5,531.2	7,535.7	9,736.4	11,565.3	12,150.2	13,309.6	14,728.1	15,499.8	17,836.0
1) 세출	4,783.4	6,530.4	8,017.3	10,054.0	10,609.9	11,817.2	13,285.4	14,541.9	16,610.8
재정투융자S/A차입금이자									
전출금									
2) 순융자	747.8	1,005.3	1,719.1	1,511.3	1,540.3	1,492.4	1,442.7	907.9	1,225.7
세입세출외전대차관									
전대차관융자회수									
나. 비금융공기업	678.9	918.8	1,621.2	731.1	395.9	652.9	490.0	470.7	785.5
전대차관이자									
(철도, 통신, 양곡)									
3. 수지차	-440.3	-1,173.7	-2,110.9	-2,222.1	-950.6	-922.9	-713.3	-64.9	259.7
4. 보전재원	440.3	1,173.7	2,110.9	2,222.1	950.6	922.9	713.3	64.9	-259.7
가. 중앙정부	539.6	847.7	1,321.1	1,650.4	660.0	836.3	931.4	83.9	-490.7
국내	266.6	522.2	1,040.4	969.2	257.4	522.8	488.1	229.9	-491.2
해외	273.0	325.5	539.2	681.2	402.6	313.5	443.3	-146.0	11.0
중앙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내부거래									-10.5
나. 비금융공기업	-99.3	326.0	531.3	571.7	290.6	86.6	-218.1	-19.0	231.0
국내	-92.6	333.8	537.5	577.1	294.3	90.6	-215.4	-19.0	221.3
해외	-6.7	-7.8	-6.2	-5.4	-3.7	-4.0	-2.7		-0.8
중앙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내부거래									10.5



### 1.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 (순계기준)

(단위 : 10억원)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 세입	23,100.9	26,187.4	32,457.2	37,486.0	43,766.7	51,547.9	61,741.0	72,820.3	85,528.3
가. 중앙정부	22,799.8	25,876.0	32,008.7	36,794.7	43,711.2	50,732.1	61,101.9	71,920.1	84,186.7
재정투융자S/A전대차관이자									
재정투융자S/A예탁금이자									
나. 비금융공기업	301.1	311.4	448.6	691.3	55.5	815.8	639.1	900.2	1,341.7
전입금									
(철도, 통신, 양곡)									
2. 세출 및 순융자	21,458.3	26,206.5	34,035.4	41,508.0	45,469.6	50,734.9	60,356.7	71,578.7	84,429.3
가. 중앙정부	20,285.5	24,611.3	32,271.5	39,516.8	43,955.5	48,755.5	59,045.2	69,804.2	82,424.1
1) 세출	18,841.2	22,667.4	28,034.2	34,918.2	39,928.4	44,725.0	52,769.9	61,072.4	71,316.2
재정투융자S/A차입금이자									
전출금									
2) 순융자	1,444.3	1,943.9	4,237.3	4,598.6	4,027.1	4,030.6	6,275.2	8,731.8	11,107.9
세입세출외전대차관									
전대차관융자회수									
나. 비금융공기업	1,172.8	1,595.2	1,763.8	1,991.2	1,514.0	1,979.4	1,311.5	1,774.5	2,005.1
전대차관이자									
(철도, 통신, 양곡)									
3. 수지차	1,642.7	-19.1	-1,578.2	-4,022.0	-1,702.9	812.9	1,384.3	1,241.6	1,099.1
4. 보전재원	-1,642.7	19.1	1,578.2	4,022.0	1,702.9	-812.9	-1,384.3	-1,241.6	-1,099.1
가. 중앙정부	-2,514.3	-1,264.7	262.9	2,722.1	244.3	-1,976.5	-2,056.8	-2,115.9	-1,762.6
국내	-1,286.7	315.3	1,534.9	3,775.9	1,498.8				
해외	-711.8	-1,579.9	-327.9	-281.9	-310.9				
중앙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내부거래	-515.8		-944.0	-771.9	-943.5				
나. 비금융공기업	871.6	1,283.8	1,315.3	1,299.9	1,458.5	1,163.6	672.5	874.3	663.5
국내	359.3	307.5	370.9	528.9	515.0				
해외	-3.4	-3.4	0.3	-0.9					
중앙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내부거래	515.8	979.7	944.0	771.9	943.5				

자료: 재무부, 『한국의 재정통계』, 각 연도 ; 재경원, 『한국통합재정수지』, 각 연도.



## 2.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 (총계기준)

(단위 : 10억원)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 세입	519.4	612.4	698.6	817.8	1,194.5	1,874.7	2,707.0	3,418.1	4,686.8
가. 중앙정부	447.8	538.1	585.1	694.5	1,038.7	1,563.6	2,326.6	2,958.4	4,107.7
재정투융자S/A전대차관이자									
재정투융자S/A예탁금이자									
나. 비금융공기업	71.6	74.3	113.5	123.3	155.8	311.1	380.4	459.7	579.1
전입금									
(철도, 통신, 양곡)									
2. 세출 및 순융자	546.8	668.7	857.4	907.5	1,505.7	2,327.9	3,122.9	3,900.6	5,313.5
가. 중앙정부	468.7	548.5	746.2	721.2	1,203.0	1,765.3	2,518.9	3,274.4	4,408.0
1) 세출	442.7	541.9	751.3	707.2	1,065.4	1,600.7	2,293.7	2,804.3	3,781.9
재정투융자S/A차입금이자									
전출금									
2) 순융자	26.0	6.6	-5.1	14.0	137.6	164.6	225.2	470.1	626.1
세입세출외전대차관									
전대차관융자회수									
나. 비금융공기업	78.1	120.2	111.2	186.3	302.7	562.6	604.0	626.2	905.5
전대차관이자									
(철도, 통신, 양곡)									
3. 수지차	-27.4	-56.3	-158.8	-89.7	-311.2	-453.2	-415.9	-482.5	-626.7
4. 보전재원	27.4	56.3	158.8	89.7	311.2	453.2	415.9	482.5	626.7
가. 중앙정부	20.9	10.4	161.1	26.7	164.3	201.7	192.3	316.0	300.3
국내	6.7	3.6	104.7	-37.6	69.4	46.1	-22.2	38.1	-64.7
해외	14.2	6.8	56.4	64.3	94.9	155.6	214.5	277.9	365.0
중앙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내부거래									
나. 비금융공기업	6.5	45.9	-2.3	63.0	146.9	251.5	223.6	166.5	326.4
국내	-5.5	1.6	37.8	64.7	152.5	276.8	195.0	158.2	321.3
해외	12.0	44.3	-40.1	-1.9	-5.6	-25.3	28.6	8.3	5.1
중앙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내부거래									

## 2.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 (총계기준)

(단위 : 10억원)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 세입	6,597.4	7,867.8	10,025.0	11,028.2	12,640.1	14,093.3	15,540.2	17,415.5	19,545.1
가. 중앙정부	5,445.3	6,833.2	8,604.8	9,983.2	11,537.5	12,603.3	13,922.0	15,840.4	18,657.9
재정투융자S/A전대차관이자									
재정투융자S/A예탁금이자									
나. 비금융공기업	1,152.1	1,034.6	1,420.2	1,045.0	1,102.6	1,490.0	1,618.2	1,575.1	887.2
전입금									
(철도, 통신, 양곡)									
2. 세출 및 순융자	7,055.9	9,156.2	12,561.8	13,263.2	13,569.2	15,093.8	16,340.9	17,550.4	19,296.3
가. 중앙정부	5,990.0	7,682.0	10,189.8	11,639.2	12,200.1	13,444.6	14,867.0	15,926.7	18,180.1
1) 세출	5,224.0	6,562.0	8,044.8	10,115.0	10,681.3	11,874.6	13,336.9	14,948.8	16,943.5
재정투융자S/A차입금이자									
전출금									
2) 순융자	766.0	1,120.0	2,145.0	1,524.2	1,518.8	1,570.0	1,530.1	977.9	1,236.6
세입세출외전대차관									
전대차관융자회수									
나. 비금융공기업	1,066.0	1,474.2	2,372.0	1,624.0	1,369.1	1,649.2	1,473.9	1,623.7	1,116.2
전대차관이자									
(철도, 통신, 양곡)									
3. 수지차	-458.5	-1,288.4	-2,536.8	-2,235.0	-929.1	-1,000.5	-800.7	-134.9	248.8
4. 보전재원	458.5	1,288.4	2,536.8	2,235.0	929.1	1,000.5	800.7	134.9	-248.8
가. 중앙정부	544.6	848.8	1,585.0	1,656.0	662.6	841.3	945.0	86.3	-477.8
국내	271.6	523.3	1,045.8	974.8	260.0	527.8	501.7	232.3	-488.8
해외	273.0	325.5	539.2	681.2	402.6	313.5	443.3	-146	11.0
중앙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내부거래									
나. 비금융공기업	-86.1	439.6	951.8	579.0	266.5	159.2	-144.3	48.6	229.0
국내	-79.4	447.4	958.0	584.4	270.2	163.2	-141.6	48.6	229.8
해외	-6.7	-7.8	-6.2	-5.4	-3.7	-4.0	-2.7		-0.8
중앙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내부거래									



## 2.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 (총계기준)

(단위 : 10억원)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 세입	23,803.7	27,382.2	33,507.6	38,209.8	44,709.8	51,852.0	62,865.5	74,235.0	86,898.0
가. 중앙정부	22,890.0	25,962.2	32,089.3	36,817.6	43,805.6	50,750.9	61,109.6	72,087.5	84,272.4
재정투융자S/A전대차관이자									
재정투융자S/A예탁금이자									
나. 비금융공기업	913.7	1,419.9	1,418.3	1,392.3	904.1	1,101.2	1,755.9	2,147.5	2,625.5
전입금									
(철도, 통신, 양곡)									
2. 세출 및 순용자	22,144.4	27,358.6	35,140.6	42,325.5	46,601.9	51,044.8	61,444.6	72,993.8	85,931.9
가. 중앙정부	20,881.4	25,677.2	33,296.1	40,311.5	44,993.4	49,046.7	60,125.4	71,051.8	83,841.0
1) 세출	19,453.8	23,776.0	29,004.0	35,618.8	40,776.0	45,010.4	53,886.8	62,319.7	72,600.1
재정투융자S/A차입금이자									
전출금									
2) 순용자	1,427.7	1,901.2	4,292.2	4,692.7	4,217.4	4,036.3	6,238.5	8,732.2	11,240.9
세입세출외전대차관									
전대차관용자회수									
나. 비금융공기업	1,263.0	1,681.4	1,844.4	2,014.0	1,608.4	1,998.2	1,319.2	1,941.9	2,090.9
전대차관이자									
(철도, 통신, 양곡)									
3. 수지차	1,659.3	23.5	-1,633.0	-4,115.7	-1,892.1	807.2	1,421.0	1,241.2	966.1
4. 보전재원	-1,659.3	-23.5	1,633.0	4,115.7	1,892.1	-807.2	-1,421.0	-1,241.2	-966.1
가. 중앙정부	-2,008.6	-285.0	1,206.9	3,494.0	1,187.8	-1,704.2	-984.2	-1,035.6	-431.5
국내	-1,296.8	315.2	1,534.8	3,775.9	1,498.7				
해외	-711.8	-600.2	-327.9	-281.9	-310.9				
중앙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내부거래									
나. 비금융공기업	349.3	261.5	426.1	621.7	704.3	897.0	-436.7	-205.6	-534.6
국내	352.7	264.8	425.8	622.6	704.3				
해외	-3.4	-3.4	0.3	-0.9					
중앙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내부거래									

자료: 재무부, 『한국의 재정통계』, 각 연도; 재경원, 『한국통합재정수지』, 각 연도.